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

2021. 12.

공공재정연구원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1
II. 공공구매제도 개요	4
1. 지방계약법과 지역업체 보호 제도와의 관계	4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지역업체 보호제도와 관계	11
3. 판로지원법과 지역업체 보호제도와 관계	13
III. 공공계약 및 지역업체 실적 분석	19
1. 전국 공공계약 실적 분석	19
2. 충청남도 물품계약의 공공계약 및 지역업체 수주 현황 분석	22
2.1 충청남도 내 시·군	22
2.2 충청남도 본청 소재 공기업	26
2.3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28
2.4 분석소결	31
3. 도 단위 비교 분석	34
3.1 공사계약	34
3.2 물품계약	36
3.3 종합쇼핑몰 계약	38
3.4 분석소결	38
4. 충청남도, 전라북도 비교 분석	39
4.1 도·시·군 단위 분석	39
4.2 본청 소재 공기업	43
4.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44
4.4 분석소결	46
5. 종합결론 및 시사점	47

IV. 수주확대 개선방안 48

1.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 48

V. 민간위탁계약 개선방안 56

1. 사무위탁 개요 56
 - 1.1 기관간 위탁 56
 - 1.2 민간위탁 법적 근거 58
- 2 충청남도 민간위탁 현황(2019-2020) 62
 - 2.1 민간위탁 현황 분석결과 62
 - 2.1 민간위탁 계약 세부내역 64
3.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 68
4.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마련 69

#. 부록 72

1. 충남지역업체 업무처리매뉴얼 7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지역업체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현행 운영실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업체의 공공구매 진입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 이러한 연구 수행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수행 비교 대상으로 전국대상 비교, 자치도별 비교, 전라북도와의 집중 비교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실적 및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방식별로는 전체 발주금액 대비 비교, 수의계약 대상 대비 비교, 지역 제한 입찰 대상 비교, 조달쇼핑몰 구매 대상 대비 비교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공공구매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기관별 구매 운영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조달정보개방포털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적인 접근을 위해 전국지자체를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지역업체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하였고
-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전국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국자치단체의 지역업체 배려와 우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와의 세부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음
- 연구 방법으로는 공사, 물품, 종합쇼핑몰 부문으로 전체금액, 수의계약 대상, 제

한 입찰 대상, 조달쇼핑몰 구매 대상 대비 지역업체 비중을 분석하여 지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원인별로 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상 구매하려는 물품의 제조구매 공장이 없거나, 계약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조달쇼핑몰에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경우라면,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지역업체의 경쟁능력(가격, 품질, 보수능력 등)이 부족하여 기관의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지역업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충청남도 각 기관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의지가 미약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노력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지역업체 배려 정책을 검토함.
- 통계의 자료수집 및 분석은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본 연구의 수행체계를 기관별·지역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였음
 - 첫 번째로 조달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된 전국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충청남도의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분석하고,
 - 두 번째로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별 물품 구매 내역, 조달쇼핑몰 구매 내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의지와 실태를 분석하였음
 - 세 번째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 내역, 조달쇼핑몰 구매 내역을 소재지별 특성, 지역 정책 등을 중점으로 집중분석하고, 지역업체 지원이 미흡한 소재 기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인력은 총 4명을 투입하여 책임연구원은 전체현황을 분석하고 총괄하며 원인별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원 1명은 수집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연구원 1인은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연구보조원 1명은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업무보조와 발주기관과의 상호 연락을 통하여 유기

적인 소통의 업무를 담당함

- 연구원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과업을 보다 성실하고 진지하며, 객관적이며 균형된 시각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II. 공공구매제도 개요

1. 지방계약법과 지역업체 보호 제도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함.
-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 모두 비슷한 법률 체계로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모두 비슷한 법률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지방계약 법령 상 원칙인 일반입찰에서의 물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 등이 있다.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임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계약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됨
- 2단계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단순노무 제외)으로서 적절한 규격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방식임.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 또한, 희망수량 입찰은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세부기준에 따라서 지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나 2단계 경쟁입찰 등은 각 자치단체가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해당 지역업체의 낙찰에 다소 유리한 기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기준등을 준용할 수밖에 없음

[참고자료1] 00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	100		-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대표사)	6	20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가		
		■ 경영상태	4				
		■ 관련 기술인력 보유인원수(용역수행인력)	5				
		■ 공동도급 * 지역 업체 단독 및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시 평가 점수 가점 부여	5				
	정성적 평가 (60점)	1 과업(용역)에 대한 이해도	10	60	제안서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		
		2. 사업수행계획 ■ 연구 범위의 적정성 ■ 연구되어야 할 핵심 내용의 포함여부 ■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 제시 여부 ■ 연구 추진방법의 체계성과 구체성(자료수집, 분석 등 포함) ■ 제안내용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35				
		3. 기술·지식 능력 ■ 투입 인력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전문성(인력 우수성 등)	10				
		4. 사후관리의 적절성	5				
입찰 가격 평가 (20점)	입찰 가격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한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20	계약담당자 평가			

- 일반입찰 제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가장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으면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임.
- 이러한 방식은 발주자들이 업무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발주자에게 가장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역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론임.
- 따라서 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기준 외에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지역업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입찰은 지역 제한 입찰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제한 입찰은 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의 개방대상 범위를 두고 있음.
-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국가행정기관이나 국가공기업, 국가의 출연기관 등은 정부조달협정(GPA)의 영향에 따라서 2.1억 원 미만으로 지역제한의 한도금액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지역업체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입찰방식으로 지명입찰 제도가 있음.
- 동 제도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제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품질인증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지명기준은 특수한 설비나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기때문에 충청남도 여건상 지명기준을 충족할만한 업체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명입찰을 통한 지역업체의 보호는 여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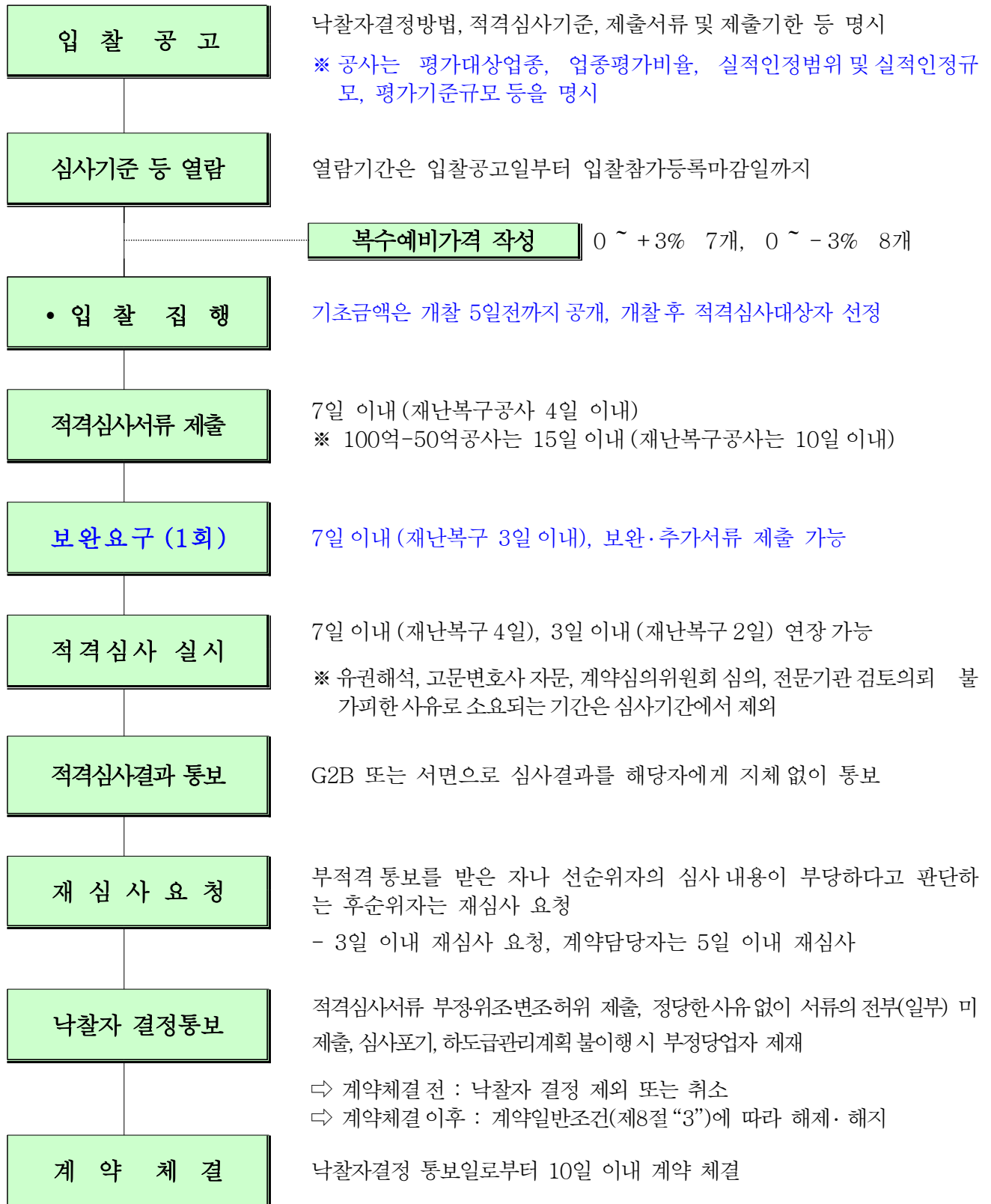
않다고 봄.

- 두 번째로 지역업체 보호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제도가 있음.
-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부가 없는 경우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의계약(隨意契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뜻하는 것이나, 지방계약법령에서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음.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본연의 의미대로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전자견적이라는 입찰의 형식을 빌려와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유리한 제도임.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부가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다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이 있음.
- 수의계약 중에서 입찰에 부칠 여부가 없는 경우,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서의 유찰,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등)의 경우와 2천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 물품, 우수조달제품,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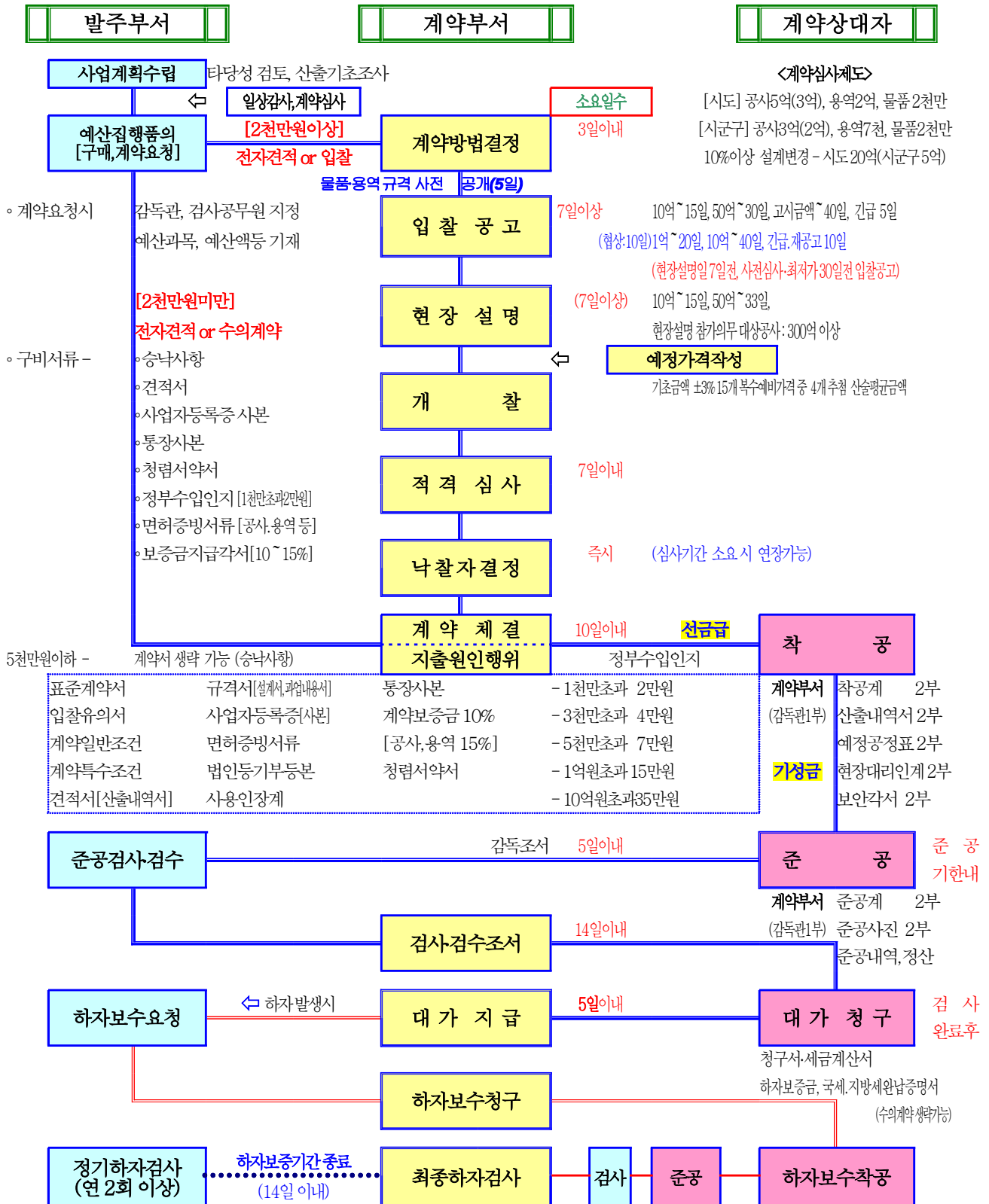
인증, 신제품등록 제품, 상이군경,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재단과는 금액 제한 없이 1인 전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인 이상 전적서 제출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의 형식을 빌려와 경쟁성을 확립하는 제도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음.
- 2인 전적에 의하여 지역 제한을 두는 내용은 도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 제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시는 일반지역 제한 입찰과 동일하게 광역시 단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도서지역의 경우로서 광역시 군은 제한 가능)
- 따라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물품의 경우 2인 전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내 시군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전적입찰을 하고 있음.
- 세 번째로 지역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가 광역시도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임
-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제도는 조달사업법령에 의한 조달청 쇼핑물에 등록된 제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외에 지역 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을 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음.

[참고자료 2]적격심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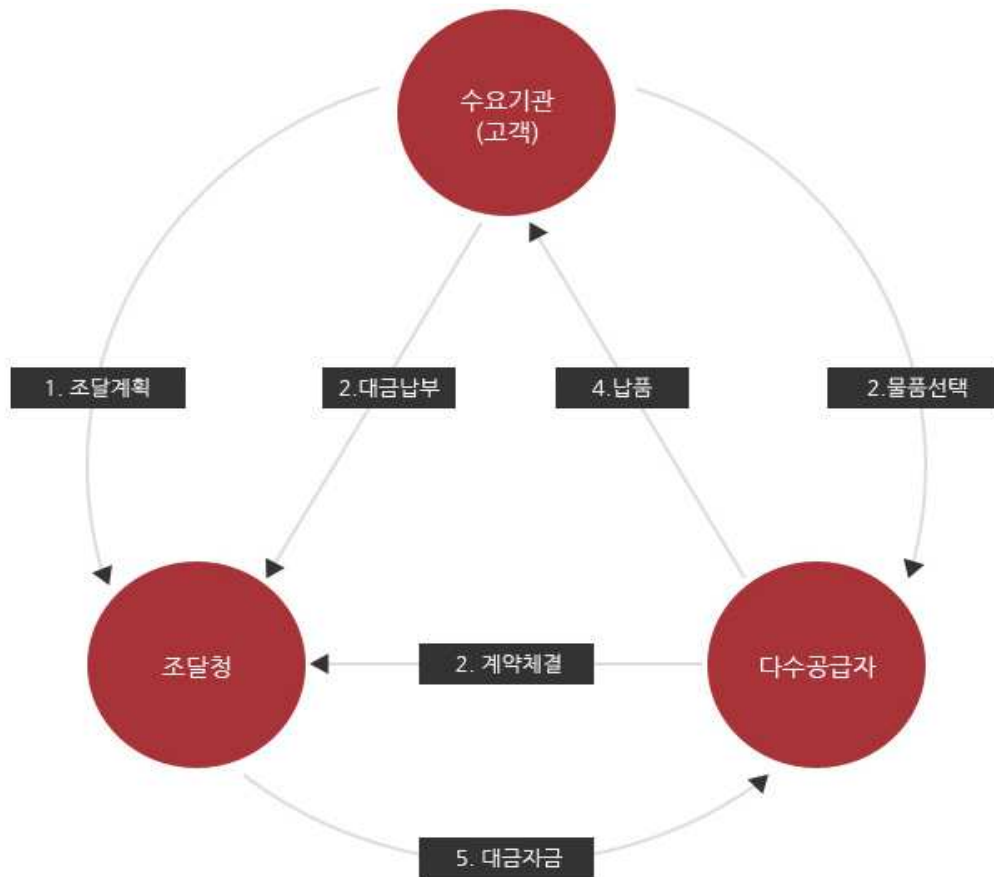
[참고자료 3] 입찰 및 수의계약 프로세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지역업체 보호제도와 관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 첫 번째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있음.
- 이는 지방계약법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함.
- 동 제도가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왜냐하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까지 그 외제품은 5천만 원까지 발주자가 제품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청 쇼핑몰에 지역 업체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지역 업체의 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사실상 물품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구매자들이 그 편리성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사업 법령상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있음
- 이는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대상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과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으로써 적격성심사를 거쳐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다수 적격자와 계약을 함
-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제품 5천만 원 이상)은 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참고자료 4] 다수공급자계약의 흐름도



- 동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의 제품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종의 경쟁방식을 통하여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일종임.
- 동 제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업체가 다소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시제품 시범구매 방식임.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의미함.

[참고자료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3. 판로지원법과 지역업체 보호제도와의 관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법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고, 해당 제도는 아래와 같음.
- 첫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4조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자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은 추정가격 2억 원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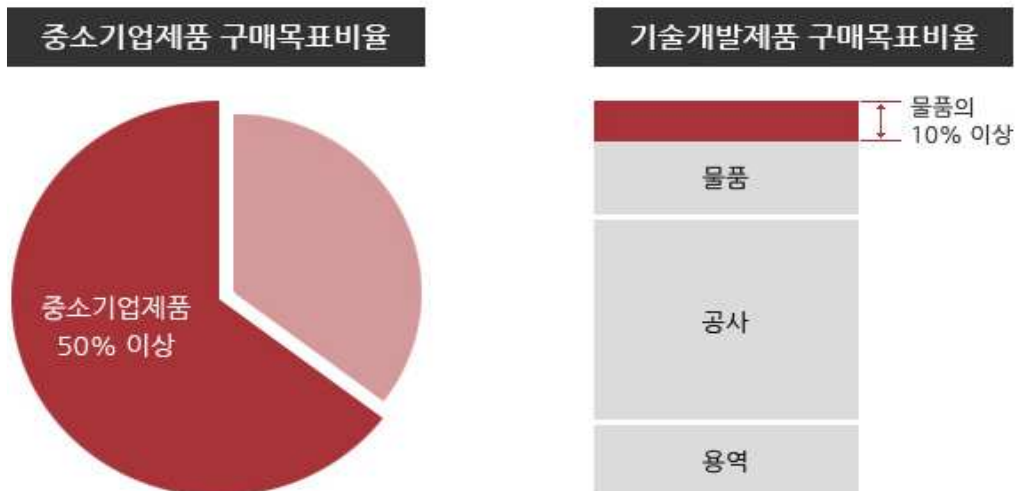
만의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인 이상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동조합 추천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입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 제한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중복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두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 지역 제한을 병행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 하였음.
- 이 경우 대부분 조달청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함.
- 네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통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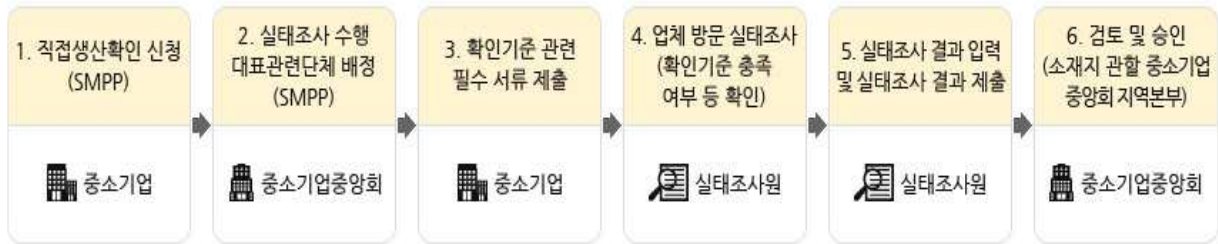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하고 있음.

[참고자료 6]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 다섯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8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있음.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는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7]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 여섯번째로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입찰참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계약법의 적격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하고 있음.

[참고자료 8]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평가표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10억원 이상	총 45점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55점	품질관리 등 신뢰경도, 계약이행 성실도	당해 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0억원 미만	경영상태 30점	70점	+3 ~ -2점	-30점

- 일곱 번째로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6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8종(수의계약 가능)에 대해서 적용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 액의 10%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두고 있음.

- 여덟번째로 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아홉번째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 제도가 있음.
- 해당 제도는 공공기관이 건당 5천만원 미만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구매할 경우, 해당 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 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참고자료 9]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업무처리 절차



-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제도는 지역업체를 겨냥한 제도가 아니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기술개발제품 업체들의 기술촉진 등을 위한 국가 전체의 제도로서 지역 업체에 대한 보호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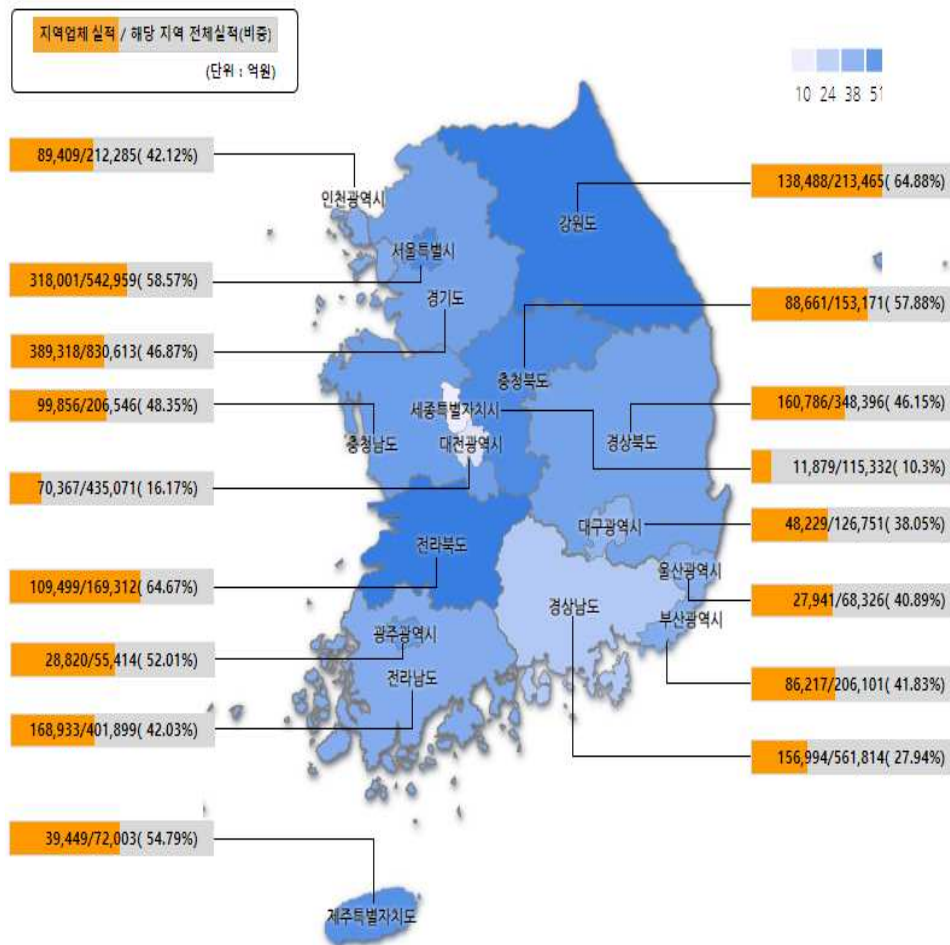
- 다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지역업체들이 많고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 지역 제한 입찰과 중소기업으로 중복하여 제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영향을 미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III. 공공계약 및 지역업체 실적 분석

1. 전국 공공계약 실적(2018년 ~ 2020년) 분석

- 전국 공공기관의 소재지별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공사, 물품, 용역 공급실적 비중을 파악해 봄.
-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실적, 지역업체 실적, 전체 건수, 지역업체 수주 건수, 비중을 분석함.
- 해당 자료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배려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내 지역업체 수주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전국 7위로 중위권 수준임.

<그림 8> 지역 전체실적 중 지역업체 실적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지역별 지역업체 실적(공사, 물품, 용역)_2018년~2020년

<표 5> 2018년~2020년 지역 업체 실적 대비 해당 지역 전체실적

(단위:건, 백만원, %)

구분	전체		지역업체 수주금액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특별시	2,520,216	54,295,901	1,259,745	31,800,093	58.57
부산광역시	1,013,199	20,610,066	370,307	8,621,668	41.83
대구광역시	835,830	12,675,149	299,407	4,822,944	38.05
인천광역시	974,805	21,228,450	348,565	8,940,858	42.12
광주광역시	583,587	5,541,381	222,741	2,881,970	52.01
대전광역시	870,521	43,507,141	314,273	7,036,733	16.17
울산광역시	532,785	6,832,566	185,888	2,794,074	40.89
세종특별자치시	285,983	11,533,181	57,099	1,187,885	10.30
경기도	3,678,186	83,061,267	2,256,935	38,931,785	46.87
강원도	1,295,753	21,346,468	551,928	13,848,835	64.88
충청북도	1,008,535	15,317,062	393,492	8,866,134	57.88
충청남도	1,360,471	20,654,560	531,171	9,985,585	48.35
전라북도	1,078,953	16,931,162	504,949	10,949,917	64.67
전라남도	1,746,904	40,189,904	648,866	16,893,265	42.03
경상북도	1,385,162	34,839,583	593,353	16,078,550	46.15
경상남도	1,703,272	56,181,421	647,697	15,699,417	27.94
제주특별자치도	540,862	7,200,279	241,479	3,944,921	54.79
전체	21,415,024	471,945,541	9,427,895	203,284,634	4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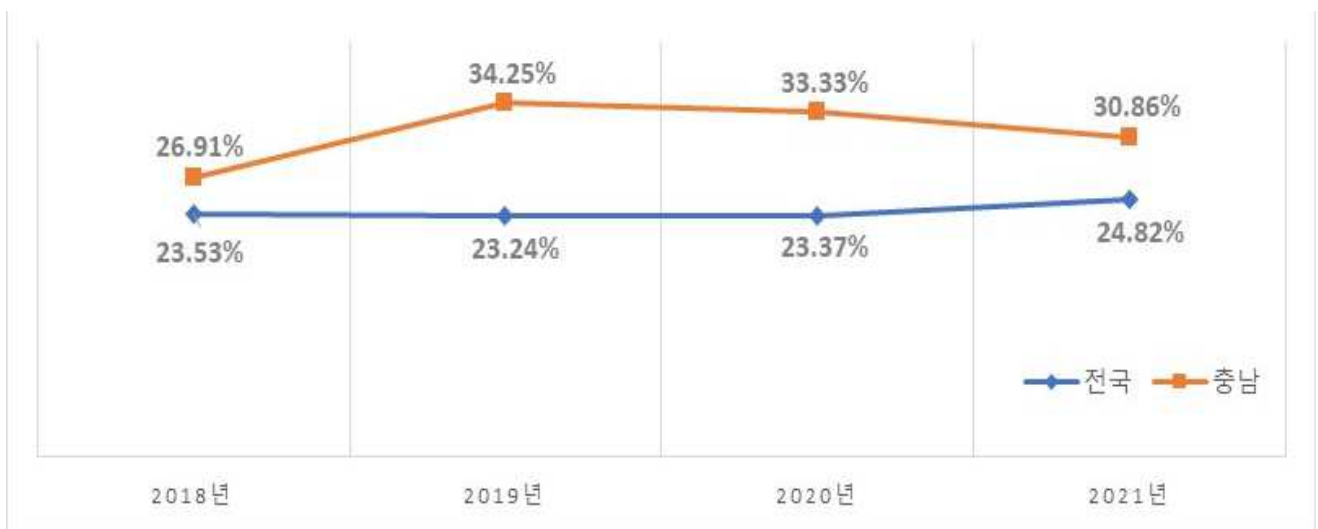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지역별 지역업체 실적(공사, 물품, 용역)_2018년~2020년

-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공개되어있는 전국 대상 해당 지역 전체실적 대비 지역업체 실적자료임.
-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는 금액 비중으로 지역업체 수주율이 17개 시도중 7위를 기록하고 있음.
- 금액 비중으로는 강원도(64.88%), 전라북도(64.67%), 서울특별시(58.57%), 충청북도(57.88%), 제주특별자치도(54.79%), 광주광역시(52.01%), 충청남도(48.35%), 경

기도(46.87%), 경상북도(46.15%), 인천광역시(42.12%), 전라남도(42.03%), 부산광역시(41.83%), 울산광역시(40.89%), 대구광역시(38.05%), 경상남도(27.94%), 대전광역시(16.17%), 세종특별자치시(10.30%)로 조사되었음.

- 건수 비중으로도 경기도(61.36%), 서울특별시(49.99%), 전라북도(46.80%), 제주특별자치도(44.65%), 경상북도(42.84%), 강원도(42.60%), 충청남도(39.04%), 충청북도(39.02%), 광주광역시(38.17%), 경상남도(38.03%), 전라남도(37.14%), 부산광역시(36.55%), 대전광역시(36.10%), 대구광역시(35.82%), 인천광역시(35.76%), 울산광역시(34.68%), 세종특별자치시(19.97%)로 7위를 나타내고 있음.
- 위 자료의 전체 평균으로 금액은 43.07%, 건수로는 44.02%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적으로 금액과 건수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금액 기준 48.35% 건수 비중 39.04%로 금액 비중과 건수 비중 모두 다 7위로 전국 평균 수준임.
- 전국 공공기관의 소재지별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공사, 물품, 용역 공급실적 비중을 연도별로 분석해 봄.
-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지역제한 실적 수주율은 낮은편이 아님(전국 24%대, 충남 30%대)
-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제한 계약 전국의 지역업체 수주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10] 연도별 지역제한 지역업체 수주 비중 변화추이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지역별 지역업체 실적(공사, 물품, 용역) 각 연도별 실적(본원가공)

2. 충청남도 물품계약(2019-2020) 공공계약 및 지역업체 수주 현황

2.1 충청남도 내 시·군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전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시(66.1%), 태안군(58.8%), 당진시(58.3%)가 상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부여군(30.5%), 논산시(35.7%), 청양군(35.9%)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계룡시(66.1%)와 부여군(30.5%)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시·군별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표 6> 충청남도 내 시·군별 전체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5,529	268,092	2,921	124,838	52.8%	46.6%
계룡시	141	3,865	61	2,555	43.3%	66.1%
공주시	420	26,196	177	11,132	42.1%	42.5%
금산군	242	11,576	115	4,405	47.5%	38.1%
논산시	267	13,292	101	4,744	37.8%	35.7%
당진시	453	23,773	265	13,861	58.5%	58.3%
보령시	470	26,344	241	14,801	51.3%	56.2%
부여군	308	12,245	167	3,736	54.2%	30.5%
서산시	543	19,702	260	10,457	47.9%	53.1%
서천군	483	20,596	296	11,548	61.3%	56.1%
아산시	378	22,136	200	8,669	52.9%	39.2%
예산군	499	28,123	259	10,695	51.9%	38.0%
천안시	410	22,163	256	11,208	62.4%	50.6%
청양군	219	13,227	91	4,755	41.6%	35.9%
태안군	274	12,103	156	7,118	56.9%	58.8%
홍성군	422	12,752	276	5,154	65.4%	40.4%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종합쇼핑몰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전체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 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2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표로 볼 경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내 청양군(35.6%), 부여군(34.2%), 천안시(33.7%)가 상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계룡시(13.1%), 논산시(16.6%), 당진시(21.1%)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계룡시(35.6%)와 부여군(13.1%)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시·군별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하며, 가장 높은 시군이 35.6%(청양군)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전체 시·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종합쇼핑몰 내 등록된 업체수를 확인하여 충청남도 내 업체의 등록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7> 2019- 2020 충청남도 내 시·군별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77,768	1,713,609	29,506	456,629	37.9%	26.6%
계룡시	2,373	56,678	370	7,445	15.6%	13.1%
공주시	6,240	141,766	1,864	32,636	29.9%	23.0%
금산군	3,227	56,415	1,013	12,238	31.4%	21.7%
논산시	5,862	139,820	1,645	23,143	28.1%	16.6%
당진시	6,040	157,094	2,205	33,219	36.5%	21.1%
보령시	5,766	125,480	1,931	38,624	33.5%	30.8%
부여군	4,885	92,705	2,001	31,665	41.0%	34.2%
서산시	6,392	126,948	2,759	40,574	43.2%	32.0%
서천군	6,044	119,653	1,882	27,980	31.1%	23.4%
아산시	6,552	184,257	2,040	44,687	31.1%	24.3%
예산군	5,952	133,783	2,779	37,260	46.7%	27.9%
천안시	4,172	133,203	1,520	44,956	36.4%	33.7%
청양군	5,912	71,267	3,589	25,362	60.7%	35.6%
태안군	4,543	103,414	2,064	33,528	45.4%	32.4%
홍성군	3,808	71,128	1,844	23,311	48.4%	32.8%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전체)

-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시(62.9%), 서천군(56.5%), 보령시(50.0%)가 상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논산시(27.2%), 아산시(28.2%), 계룡시(35.6%)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당진시(62.9%)와 부여군(27.2%)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시·군별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 대부분의 시·군이 건수 비중 대비 금액 비중이 낮은 것은 계약 건당 금액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일 계약 금액이 높은 건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표 8> 2019-2020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4,770	173,311	2,449	75,009	51.3%	43.3%
계룡시	126	1,884	50	670	39.7%	35.6%
공주시	357	14,047	136	5,527	38.1%	39.3%
금산군	230	9,516	112	3,906	48.7%	41.0%
논산시	227	8,702	76	2,371	33.5%	27.2%
당진시	414	17,197	240	10,810	58.0%	62.9%
보령시	308	11,601	156	5,798	50.6%	50.0%
부여군	286	6,062	151	2,358	52.8%	38.9%
서산시	403	10,244	187	4,594	46.4%	44.8%
서천군	454	17,630	275	9,955	60.6%	56.5%
아산시	310	15,738	150	4,444	48.4%	28.2%
예산군	471	20,728	244	8,500	51.8%	41.0%
천안시	365	13,532	221	5,969	60.5%	44.1%
청양군	199	10,508	84	3,990	42.2%	38.0%
태안군	212	5,717	101	2,291	47.6%	40.1%
홍성군	408	10,205	266	3,825	65.2%	37.5%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 물품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홍성군(68.0%), 천안시(61.1%), 부여군(57.2%)**가 상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논산시(26.9%), 공주시(29.0%), 청양군(31.8%)**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홍성군(68.0%)와 논산시(26.9%)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므로 시·군별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 단일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수주율이 48.7%로 전체수의 계약 수주 대비 5.4% 높게 조사됨

<표 9> 2019- 2020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438	35,007	1,695	17,065	49.3%	48.7%
계룡시	100	939	40	341	40.0%	36.4%
공주시	241	2,520	74	732	30.7%	29.0%
금산군	143	1,534	65	546	45.5%	35.6%
논산시	149	1,195	39	322	26.2%	26.9%
당진시	307	3,665	171	2,048	55.7%	55.9%
보령시	181	1,768	72	644	39.8%	36.4%
부여군	228	2,338	127	1,336	55.7%	57.2%
서산시	293	3,148	115	1,203	39.2%	38.2%
서천군	315	2,692	173	1,535	54.9%	57.0%
아산시	226	2,026	117	969	51.8%	47.8%
예산군	344	3,211	170	1,584	49.4%	49.3%
천안시	286	2,969	171	1,813	59.8%	61.1%
청양군	122	1,081	46	344	37.7%	31.8%
태안군	159	1,871	78	893	49.1%	47.7%
홍성군	344	4,048	237	2,753	68.9%	68.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2.2 충청남도 본청 소재 공기업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소재지를 둔 중앙공기업 전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중앙공기업 전체는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원(16.9%), 독립기념관(10.9%)가 상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소재지 중앙공기업 중 국립해양생물자원관(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2.2%), 국립생태원(2.3%)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주)는 전체 발수 건수도 낮으며, 지역업체가 수주한 계약 건이 없음
- 충청남도 내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물품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은 건수 기준 5.8%, 금액 기준 4.4%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으로서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10> 2019- 2020 충청남도 본청 소재 공기업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기업 전체	3,922	137,632	229	6,053	5.8%	4.4%
국립생태원	235	9,231	14	215	6.0%	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59	8,348	2	97	3.4%	1.2%
독립기념관	413	7,085	121	770	29.3%	1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5	16,774	35	2,829	14.9%	16.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75	95,710	57	2,142	1.9%	2.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3	406	0	0	0.0%	0.0%
한국중부발전(주)	2	77	0	0	0.0%	0.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종합쇼핑몰에 대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 전체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국가공기업 전체는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10.5%)로 상위권으로 분석됨
- 충청남도 소재지 국가공기업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3.1%)과 국립생태원(3.4%)은 낮은 수치를 보이며,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주)는 전체 계약 건수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계약 건이 없음(계약의 특성상 그럴 수는 있음)

<표 11> 2019- 2020 충청남도 본청 소재 국가 공기업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기업 전체	4,137	141,926	158	4,620	3.8%	3.3%
국립생태원	377	7,353	38	247	10.1%	3.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69	4,091	22	199	8.2%	4.9%
독립기념관	377	3,108	26	327	6.9%	10.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8	53,219	44	3,165	2.4%	5.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28	21,875	27	679	3.7%	3.1%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284	12,042	1	4	0.4%	0.0%
한국중부발전(주)	264	40,240	0	0	0.0%	0.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

-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9년-2020년 진행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물품 수의계약 내역 검토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총 3건 금액 43만원이 유일했으며, 지역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에 진행된 2건의 계약은 모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었으며, 수주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니었음

<표 12> 2019- 2020 충청남도 본청 소재 국가 공기업 물품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국생산	전체	3	43	0	0	0.0%	0.0%
기술연구원	2천만원이하	2	22	0	0	0.0%	0.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2.3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출자·출연기관 전체는 16.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100.0%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20건의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비율이 0%인 것을 보아 기관이나 계약의 특성상 있을수 있으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3> 2019- 2020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체		368	59,380	132	10,048	35.9%	16.9%
충청남도개발공사		90	7,487	46	2,955	51.1%	39.5%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	1,729	4	159	40.0%	9.2%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2	125	2	125	100.0%	10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	31	0	0	0.0%	0.0%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16	132	1	10	6.3%	7.5%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8	318	11	120	39.3%	37.7%
충남신용보증재단		5	99	2	46	40.0%	46.7%
충남테크노파크		104	32,465	46	4,542	44.2%	14.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0	5,145	0	0	0.0%	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89	11,849	20	2,091	22.5%	17.6%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

- 종합쇼핑몰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전체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1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지표로 볼 경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개발공사 24.5%, 충청남도 흥성의료원 21.3%가 상위권으로 조사됨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총 20개의 기관중 11개의 기관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0%인 것을 고려했을 때,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수 있으나 충청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 2019- 2020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체	3,290	130,574	359	20,257	10.9%	15.5%
충청남도개발공사	1,130	73,747	247	18,075	21.9%	24.5%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35	17,389	1	0	0.2%	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35	5,288	3	8	2.2%	0.1%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8	82	8	3	28.6%	4.1%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3	4,332	46	585	22.7%	13.5%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0	22	0	0	0.0%	0.0%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14	48	0	0	0.0%	0.0%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4	9	0	0	0.0%	0.0%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72	294	0	0	0.0%	0.0%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05	1,622	9	263	8.6%	16.2%
재단법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10	102	0	0	0.0%	0.0%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93	1,292	0	0	0.0%	0.0%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5	3	0	0	0.0%	0.0%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45	5,271	1	8	0.4%	0.1%
충남신용보증재단	36	33	0	0	0.0%	0.0%
충남테크노파크	283	6,247	25	473	8.8%	7.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29	7,536	0	0	0.0%	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1	3,371	2	17	3.9%	0.5%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표 15> 2019- 2020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체	3,290	130,574	359	20,257	10.9%	15.5%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4	9	0	0	0.0%	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88	3,877	17	824	19.3%	21.3%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

-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물품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출자·출연기관 전체는 4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천만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해서는 42.3%의 비중을 보임
- 2천만원 이하의 계약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비율이 근소한 차이(1.2%)로 전체수 의계약대비 높기는 하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세부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전체 건수 비중은 50.2%이었으나 2천만원 이하는 79.4%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6> 2019- 2020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수의계약 전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도 전체	219	8,628	94	3,552	42.9%	41.2%	132	1,309	57	553	43.2%	42.3%
충청남도개발공사	72	4,132	37	1,883	51.4%	45.6%	45	450	22	202	48.9%	44.9%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8	375	4	159	50.0%	42.4%	1	15	0	0	0.0%	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	31	0	0	0.0%	0.0%	4	31	0	0	0.0%	0.0%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15	117	1	10	6.7%	8.4%	15	117	1	10	6.7%	8.4%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8	318	11	120	39.3%	37.7%	23	206	8	59	34.8%	28.8%
충남신용보증재단	1	13	0	0	0.0%	0.0%	1	13	0	0	0.0%	0.0%
충남테크노파크	60	2,628	38	1,318	63.3%	50.2%	31	317	24	251	77.4%	79.4%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1	1,014	3	62	9.7%	6.1%	12	160	2	30	16.7%	19.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2.4 분석소결

-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전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 기준으로 52.8% 비중을 보임
- 계룡시(66.1%), 태안군(58.8%), 당진시(58.3%)가 상위권을 보이며, 부여군(30.5%), 논산시(35.7%), 청양군(35.9%)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전체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 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2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 기준 37.9%의 비중을 보임
- 해당 수치는 절대적인 지표로 볼 경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내 청양군(35.6%), 부여군(34.2%), 천안시(33.7%)가 상위권을 보이며, 계룡시(13.1%), 논산시(16.6%), 당진시(21.1%)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조달쇼핑몰 구매내역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업체 배려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지역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원인에 해당됨
- 종합쇼핑몰 내 등록된 업체수를 확인한 결과, 도단위 중 충청남도는 6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등록율 7.17%로 낮은 수치를 보임

<표 17> 지역별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수

(단위:개소, %)

구분	조달 등록업체수	비율	순위
경기도	3,267	39.85%	1
강원도	538	6.56%	7
충청북도	532	6.49%	8
충청남도	588	7.17%	6
전라북도	752	9.17%	5
전라남도	754	9.20%	4
경상북도	848	10.34%	2
경상남도	786	9.59%	3
제주특별자치도	133	1.62%	9
합계	8,198	100.00%	

* 출처 : 조달쇼핑몰

- 또한 지역업체의 제품이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 다른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 기준 51.3%를 보임
- 당진시(62.9%), 서천군(56.5%), 보령시(50.0%)가 상위권을 보이며, 논산시(27.2%), 아산시(28.2%), 계룡시(35.6%)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시·군이 건수 비중 대비 금액 비중이 낮은 것은 계약 건당 금액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일 계약 금액이 높은 건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물품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내 시·군별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 기준 49.3%를 보임
- 홍성군(68.0%), 천안시(61.1%), 부여군(57.2%)가 상위권을 보이며, 논산시(26.9%), 공주시(29.0%), 청양군(31.8%)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음
- 단일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수주율이 48.7%로 전체수의 계약 수주 대비 5.4% 높게 조사됨
-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충청남도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종합쇼핑몰 계약건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업체 등록 활성화 및 물품사용 장려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 시군별 공공계약 비중이 높은 업체, 부서, 시군 등에 대하여 수주확대를 위한 노고에 기여함을 포상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주확대를 장려해야 함
- 물품계약에 대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중앙공기업 전체는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한국기술교육대학원(16.9%), 독립기념관(10.9%)가 상위권을 보이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2.2%), 국립생태원(2.3%)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내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물품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은 건수 기준 5.8%, 금액 기준 4.4%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2019년-2020년 진행된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의 물품 수의계약 내역 검토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총 3건 금액 43만원이 유일했으며, 지역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2019년에 진행된 2건의 계약은 모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었으며, 수주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니었음)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국가공기업으로서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물품계약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출자·출연기관 전체는 16.9%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20건의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비율이 0%인 것을 보아 충청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도 단위 비교 분석

3.1 공사계약

■ 공사계약 전체

- 공사계약 전체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으로는 90.0%이지만 금액 기준 52.0%로 계약금액이 큰 계약 건에 대해 타 도에서 업체로 계약되고 있다고 해석됨
- 도 중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98.6%, 금액 기준 94.7%로 높은 수주율을 보임

<표 18> 2019- 2020 도별 공사계약 전체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292	1,683,540	2,062	874,759	90.0%	52.0%
강원도	377	306,961	344	105,433	91.2%	34.3%
경기도	184	16,368	164	14,240	89.1%	87.0%
충청남도	139	32,274	137	30,558	98.6%	94.7%
충청북도	256	132,399	235	86,841	91.8%	65.6%
전라남도	419	432,547	358	243,862	85.4%	56.4%
전라북도	357	138,632	338	90,897	94.7%	65.6%
경상남도	314	300,435	277	134,414	88.2%	44.7%
경상북도	246	323,923	209	168,514	85.0%	52.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

-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 96.1%, 금액 기준 95.1%로 수의계약의 상당부분은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 중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100.0%로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역업체가 모두 수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사 수의계약 부문에 있어 충청남도는 지역업체를 많이 배려하고 있음

<표 19> 도별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165	42,409	1,120	40,327	96.1%	95.1%
강원도	226	17,900	218	17,340	96.5%	96.9%
경기도	130	2,636	113	2,410	86.9%	91.4%
충청남도	104	2,184	104	2,184	100.0%	100.0%
충청북도	159	2,572	155	2,543	97.5%	98.9%
전라남도	174	7,319	161	6,086	92.5%	83.1%
전라북도	110	2,607	108	2,589	98.2%	99.3%
경상남도	123	3,923	123	3,923	100.0%	100.0%
경상북도	139	3,267	138	3,252	99.3%	99.5%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공사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공사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 95.5%, 금액 기준 95.8%로 수의계약의 상당부분은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으며, 자치도 중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100.0%임

<표 20> 자치도별 공사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778	8,815	743	8,445	95.5%	95.8%
강원도	117	1,475	113	1,437	96.6%	97.4%
경기도	102	1,317	87	1,167	85.3%	88.6%
충청남도	87	917	87	917	100.0%	100.0%
충청북도	134	1,334	130	1,305	97.0%	97.8%
전라남도	94	1,078	85	958	90.4%	88.9%
전라북도	76	627	74	609	97.4%	97.1%
경상남도	62	555	62	555	100.0%	100.0%
경상북도	106	1,513	105	1,498	99.1%	99.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3.2 물품계약

■ 물품계약 전체

- 물품계약 전체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으로는 76.7%이지만 금액 기준 63.4%로 계약금액이 큰 계약 건에 대해 타 도의 지역업체가 수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도 중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86.0%, 금액 기준 80.6%로 높은 수주율을 보임

<표 21> 자치도별 물품계약 전체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5,061	508,824	3,883	322,412	76.7%	63.4%
강원도	1,126	88,695	790	36,866	70.2%	41.6%
경기도	669	63,239	480	45,405	71.7%	71.8%
충청남도	628	36,607	540	29,503	86.0%	80.6%
충청북도	437	50,005	307	32,457	70.3%	64.9%
전라남도	913	63,947	740	39,068	81.1%	61.1%
전라북도	372	49,168	315	33,384	84.7%	67.9%
경상남도	545	86,434	413	55,014	75.8%	63.6%
경상북도	371	70,728	298	50,715	80.3%	71.7%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

-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으로는 75.4%이지만 금액 기준 62.0%로 계약금액이 큰 계약 건에 대해 타 도의 지역업체가 수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도 중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87.2%, 금액 기준 89.6%로 높은 수주율을 보임
- 물품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의 수주율이 더 높은 것을 보아 수의계약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2> 도별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683	256,038	2,776	158,766	75.4%	62.0%
강원도	914	42,034	664	19,686	72.6%	46.8%
경기도	491	29,738	311	14,196	63.3%	47.7%
충청남도	506	19,792	441	17,740	87.2%	89.6%
충청북도	282	26,135	176	14,356	62.4%	54.9%
전라남도	783	35,277	644	25,267	82.2%	71.6%
전라북도	210	15,948	182	9,078	86.7%	56.9%
경상남도	277	37,370	178	19,416	64.3%	52.0%
경상북도	220	49,743	180	39,026	81.8%	78.5%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물품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물품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 80.8%, 금액 기준 80.2%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86.6%, 금액 기준 87.9%로 높은 수주율을 보임

<표 23> 도별 물품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281	21,449	1,843	17,194	80.8%	80.2%
강원도	577	5,456	455	4,181	78.9%	76.6%
경기도	323	2,694	228	1,730	70.6%	64.2%
충청남도	418	3,844	362	3,379	86.6%	87.9%
충청북도	153	1,270	105	932	68.6%	73.4%
전라남도	492	4,619	429	3,937	87.2%	85.2%
전라북도	135	1,261	124	1,149	91.9%	91.1%
경상남도	68	709	39	470	57.4%	66.2%
경상북도	115	1,596	101	1,415	87.8%	88.7%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3.3 종합쇼핑몰 계약

- 종합쇼핑몰 계약에 대한 자치도별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 전체 건수 기준 3.6%, 금액 기준 5.4%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건수 기준 14.5%, 금액 기준 11.6%로 높은 수주율을 보임
-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해석할 경우, 충남도는 낮은 수주율을 보이고 있음

<표 24> 도별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9,593	1,286,350	715	68,823	3.6%	5.4%
강원도	2,642	244,692	55	16,837	2.1%	6.9%
경기도	1,767	110,604	25	852	1.4%	0.8%
충청남도	839	19,754	122	2,288	14.5%	11.6%
충청북도	2,266	102,210	138	7,942	6.1%	7.8%
전라남도	3,521	164,058	149	7,941	4.2%	4.8%
전라북도	2,273	93,225	56	527	2.5%	0.6%
경상남도	3,388	236,438	87	29,830	2.6%	12.6%
경상북도	2,897	315,370	83	2,607	2.9%	0.8%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3.4 분석소결

- 도 단위 비교결과 충청남도는 공사계약, 물품계약, 종합쇼핑몰 계약 모든 부문에서 높은 수주율을 보임
- 공사 및 물품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주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쇼핑몰의 수주율은 낮은 수치를 보임
- 종합쇼핑몰의 수주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종합쇼핑몰 내 등록된 업체의 수 또는 품질에 대한 상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충청남도, 전라북도 비교 분석

4.1 도 · 시 · 군 단위 분석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한 도 · 시 · 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 · 군별 전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전체 59.9%의 비중을 보임
- 충청남도 계룡시(66.1%), 태안군(58.8%), 당진시(58.3%), 전라북도 김제시(74.3%), 전주시(72.2%), 정읍시(68.6%)가 상위권을 보이며, 충청남도 부여군(30.5%), 논산시(35.7%), 청양군(35.9%), 전라북도 장수군(37.1%), 임실군(43.4%), 진안군(46.2%)이 하위권을 보임
-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시 · 군 상위권과 하위권은 2배 이상의 수주율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남도 대비 전라북도의 수주율은 전라북도가 모두 상위임

<표 25> 도 및 시·군별 전체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5,529	268,092	2,921	124,838	52.8%	46.6%
전라북도		3,620	209,504	2,614	125,486	72.2%	59.9%
상위권	계룡시	141	3,865	61	2,555	43.3%	66.1%
	김제시	169	12,511	128	9,301	75.7%	74.3%
	태안군	274	12,103	156	7,118	56.9%	58.8%
	전주시	533	31,307	470	22,600	88.2%	72.2%
	당진시	453	23,773	265	13,861	58.5%	58.3%
	정읍시	712	30,094	560	20,655	78.7%	68.6%
하위권	부여군	308	12,245	167	3,736	54.2%	30.5%
	장수군	92	8,247	40	3,063	43.5%	37.1%
	논산시	267	13,292	101	4,744	37.8%	35.7%
	임실군	154	6,881	53	2,986	34.4%	43.4%
	청양군	219	13,227	91	4,755	41.6%	35.9%
	진안군	234	14,309	142	6,607	60.7%	46.2%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종합쇼핑몰에 대한 도·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치시·군별 전체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2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47.8%의 비중을 보임
- 충청남도 청양군(35.6%), 부여군(34.2%), 천안시(33.7%), 전라북도 남원시(53.3%), 김제시(52.6%), 익산시(51.0%)가 상위권을 보이며, 충청남도 계룡시(13.1%), 논산시(16.6%), 당진시(21.1%), 전라북도 무주군(38.5%), 진안군(42.1%), 임실군(42.3%)이 하위권을 보임
- 충청남도 자치시·군의 상위권은 30%대의 수주율을 보이거나 전라북도의 자치시·군의 상위권은 50%대의 수주율을 보임
-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의 자치시·군의 수주율은 충청남도 자치시·군의 수주율을 상위하고 있음

<표 26> 도 자치시·군별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77,768	1,713,609	29,506	456,629	37.9%	26.6%
전라북도		77,783	1,887,328	44,236	901,954	56.9%	47.8%
상위권	청양군	5,912	71,267	3,589	25,362	60.7%	35.6%
	남원시	6,495	157,816	3,667	84,167	56.5%	53.3%
	부여군	4,885	92,705	2,001	31,665	41.0%	34.2%
	김제시	7,644	191,630	4,605	100,724	60.2%	52.6%
	천안시	4,172	133,203	1,520	44,956	36.4%	33.7%
	익산시	5,149	196,769	2,937	100,308	57.0%	51.0%
하위권	계룡시	2,373	56,678	370	7,445	15.6%	13.1%
	무주군	5,547	113,380	3,082	43,602	55.6%	38.5%
	논산시	5,862	139,820	1,645	23,143	28.1%	16.6%
	진안군	4,556	100,695	2,646	42,362	58.1%	42.1%
	당진시	6,040	157,094	2,205	33,219	36.5%	21.1%
	임실군	6,038	124,894	3,120	52,786	51.7%	42.3%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전체)

-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도 자치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자치시·군별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6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 당진시(62.9%), 서천군(56.5%), 보령시(50.0%), 전라북도 정읍시(91.2%), 부안군(84.0%), 김제시(75.3%)가 상위권을 보이며, 충청남도 논산시(27.2%), 아산시(28.2%), 계룡시(35.6%), 전라북도 임실군(21.3%), 장수군(24.2%), 진안군(29.7%)이 하위권을 보임
- 도 전체 수주율을 비교하면 전라북도가 충청남도를 상위 하고 있음
- 자치시·군의 상위군은 전라북도 자치시·군이 큰 차이로 상위하고 있으나, 하위권의 경우는 충청남도의 자치시·군이 약간의 차이로 상위하고 있음
- 충청남도 자치시·군은 시군간의 수주율 격차는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수주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 도 자치시·군별 수의계약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4,770	173,311	2,449	75,009	51.3%	43.3%
전라북도		2,957	117,539	2,161	75,732	73.1%	64.4%
상위권	당진시	414	17,197	240	10,810	58.0%	62.9%
	정읍시	661	19,330	536	17,628	81.1%	91.2%
	서천군	454	17,630	275	9,955	60.6%	56.5%
	부안군	101	7,353	49	6,175	48.5%	84.0%
	보령시	308	11,601	156	5,798	50.6%	50.0%
	김제시	94	5,546	62	4,179	66.0%	75.3%
하위권	논산시	227	8,702	76	2,371	33.5%	27.2%
	임실군	115	3,069	30	655	26.1%	21.3%
	아산시	310	15,738	150	4,444	48.4%	28.2%
	장수군	69	5,233	21	1,265	30.4%	24.2%
	계룡시	126	1,884	50	670	39.7%	35.6%
	진안군	178	6,752	94	2,008	52.8%	29.7%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 물품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도 자치시·군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자치시·군별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 70.1%의 비중을 보임
- 충청남도 홍성군(68.0%), 천안시(61.1%), 부여군(57.2%), 전라북도 완주군(100.0%), 군산시(89.7%), 전주시(86.1%)가 상위권을 보이며, 충청남도 논산시(26.9%), 공주시(29.0%), 청양군(31.8%), 전라북도 임실군(16.6%), 김제시(17.4%), 무주군(21.2%)이 하위권을 보임
- 2천만원 이하 수주율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자치시·군의 수의계약 전체 수주율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소액수의계약에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8> 도 자치시·군별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3,438	35,007	1,695	17,065	49.3%	48.7%
전라북도		1,781	17,318	1,229	12,137	69.0%	70.1%
상위권	홍성군	344	4,048	237	2,753	68.9%	68.0%
	완주군	1	19	1	19	100.0%	100.0%
	천안시	286	2,969	171	1,813	59.8%	61.1%
	군산시	45	530	39	475	86.7%	89.7%
	부여군	228	2,338	127	1,336	55.7%	57.2%
	전주시	240	2,601	205	2,240	85.4%	86.1%
하위권	논산시	149	1,195	39	322	26.2%	26.9%
	임실군	84	835	16	139	19.0%	16.6%
	공주시	241	2,520	74	732	30.7%	29.0%
	김제시	29	295	4	52	13.8%	17.4%
	청양군	122	1,081	46	344	37.7%	31.8%
	무주군	26	257	3	55	11.5%	21.2%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4.2 본청 소재 공기업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 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공기업 전체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소재지 국가공기업 전체는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8.7%의 비중을 보임

<표 29> 도단위 본청 소재지 국가공기업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공기업	3,922	137,632	229	6,053	5.80%	4.40%
전라북도 공기업	818	58,284	283	16,703	34.6%	28.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5	16,774	35	2,829	14.9%	16.9%
국민연금공단	296	18,284	84	5,118	28.4%	28.0%
국립생태원	235	9,231	14	215	6.0%	2.3%
한국전기안전공사	242	18,013	46	1,560	19.0%	8.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59	8,348	2	97	3.4%	1.2%
새만금개발공사	30	1,230	27	1,191	90.0%	96.8%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종합쇼핑몰에 대한 국가 공기업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공기업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소재지 공기업 전체는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7.2%의 비중을 보임

<표 30> 각 도단위 본청 소재지 중앙공기업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공기업	4,137	141,926	158	4,620	3.8%	3.3%
전라북도 공기업	3,768	158,651	219	11,365	5.8%	7.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8	53,219	44	3,165	2.4%	5.9%
국민연금공단	1,233	51,130	100	9,032	8.1%	1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28	21,875	27	679	3.7%	3.1%
전북대학교병원	588	14,903	50	1,066	8.5%	7.2%
국립생태원	377	7,353	38	247	10.1%	3.4%
한국전기안전공사	263	12,901	4	50	1.5%	0.4%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4.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 일반계약(입찰)

- 물품계약에 대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물품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전체는 16.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전라북도 지방출자·출연기관 대비 10분의 3의 수주율을 보임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개발공사 대비 지역업체 수주율이 높은 반면,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주율을 보임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중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기관을 독려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야 할 것임

<표 31> 지방출자·출연 기관 물품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368	59,380	132	10,048	35.9%	16.9%
전북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420	50,264	346	25,709	82.4%	51.1%
충청남도개발공사	90	7,487	46	2,955	51.1%	39.5%
전라북도개발공사	16	6,249	8	440	50.0%	7.0%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89	11,849	20	2,091	22.5%	17.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17	7,073	109	6,672	93.2%	94.3%
충남테크노파크	104	32,465	46	4,542	44.2%	14.0%
전북테크노파크	36	8,384	13	1,241	36.1%	14.8%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

- 종합쇼핑몰에 대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종합쇼핑몰 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전체는 1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48.8%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전라북도 지방출자·출연기관 대비 10분의 3의 수주율을 보임
-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충남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동일 기관 대비 수주율이 매우 낮음

<표 32>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종합쇼핑몰 계약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	3,290	130,574	359	20,257	10.9%	15.5%
전북	1,998	77,041	545	37,570	27.3%	48.8%
충청남도개발공사	1,130	73,747	247	18,075	21.9%	24.5%
전라북도개발공사	290	25,351	121	20,450	41.7%	80.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88	3,877	17	824	19.3%	21.3%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67	5,715	62	1,062	23.2%	18.6%
충남테크노파크	283	6,247	25	473	8.8%	7.6%
전북테크노파크	186	11,314	56	5,009	30.1%	44.3%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종합쇼핑몰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전체)

-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 기준 충청남도 전체는 4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4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건수 비중과 금액 비중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3>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수의계약(전체)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	219	8,628	94	3,552	42.9%	41.2%
전북	197	10,628	166	5,152	84.3%	48.5%
충청남도개발공사	72	4,132	37	1,883	51.4%	45.6%
전라북도개발공사	9	211	6	191	66.7%	90.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1	1,014	3	62	9.7%	6.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2	672	16	350	72.7%	52.0%
충남테크노파크	60	2,628	38	1,318	63.3%	50.2%
전북테크노파크	21	2,118	10	211	47.6%	10.0%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 물품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지역업체 수주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수의계약 중 단일건 2천만원 이하 지역업체 수주 금액 기준 충청남도는 4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83.7% 비중을 보임
- 충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수주율은 전라북도 대비 2분의 1 수준을 보임
- 이전 수의계약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천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때,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이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34> 충청남도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수의계약(2천만원이하) 지역업체 수주 비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전체		지역업체수주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	132	1,309	57	553	43.2%	42.3%
전북	62	731	51	612	82.3%	83.7%
충청남도개발공사	45	450	22	202	48.9%	44.9%
전라북도개발공사	5	43	2	23	40.0%	53.2%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2	160	2	30	16.7%	19.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1	103	9	92	81.8%	90.0%
충남테크노파크	31	317	24	251	77.4%	79.4%
전북테크노파크	10	141	4	53	40.0%	37.3%

* 출처 : 조달정보개방포털, 물품 계약 상세내역(본원 가공)_2019~2020

4.4 분석소결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부문별 수주율 비교결과, 모든 부문에서 충청남도의 수주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충청남도는 모든 부문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50%를 넘지 못함
-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수주율이 낮은 이유는 충청남도를 소재지로 두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충청남도의 수의계약 중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사한 수주율을 보이며, 전라북도는 2천만원 이하 수주율이 더 높음
- 이를 통해 전라북도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업체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5. 종합결론 및 시사점

- 물품 구매내역, 수의계약 내역, 조달쇼핑몰 이용 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충청남도는 전체 도(道) 중 평균의 실적으로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으로 충청남도 실무자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가 부족해서만은 아니고, 생산자가 없거나 지리적 특색과 체계화된 업무 환경(지역 업체 정보관리)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구매에 참여하려는 업체에서도 품질향상, 가격 절감, 사후지원 서비스 대책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나서야 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문제가 중첩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업체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소재 기관 발주금액 중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국가계약법령 기관(국가공기업)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공기업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업체 유치나 육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는 기업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투자유치, 지방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해외통상사무소, 지역기술개발제품 홍보 등을 하고 있고, 실제 지원정책으로 혜택을 본 업체는 많지만, 공공구매 시장에서는 체감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우선 충청남도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을 좀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업체 배려를 위하여 국가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수주확대 개선방안

1.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

가. 공공구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에는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일일이 통계를 취합하여야만 가능하게 되어있음
- 이처럼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현황을 파악하다가 시간이 모두 소진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군,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그래도 통계를 취합하는데 협조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교육 자치단체나 충청남도 관내 국가공기업까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수주촉진을 협조 요구하거나 독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나라장터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한편 시스템 구축은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나 용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스템이 마련되면 지역업체 현황을 업종별로 등록하여 발주자들이 지역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업체 수주가 좀 더 용이하게 해주며 충청남도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수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지역업체의 조달쇼핑몰 등록지원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달쇼핑몰 품목 433개중 112개 품목은 충청남도지역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으나 조달쇼핑몰 등록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어렵기때문에 업체들이 등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조달청 쇼핑몰 등록을 위한 충남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선 수요조사를 통하여 업체들의 현황을 업종별로 파악하고 등록요건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쇼핑몰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파악해본 후 요건이 되는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다.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배려대책 강구

- 충청남도의 전체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보면 43.3%로 전라북도 51.3%에 비하면 낮은 편임
-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업체가 없거나 수의계약의 대상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우수조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충남지역에 우수조달제품을 소지한 업체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의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한편으로 우수조달 제품이 충남지역 업체가 없는 경우 반드시 우수조달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수조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면서 지역업체 물품을 수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럴 경우 지역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그리고 지역 내 업체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계약법상 1인 수의계약은 발주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라. 조달청 쇼핑몰 제품구매시 지역업체 우선구매

- 충청남도 지역업체 중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업체가 588개 업체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통계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됨
- 충청남도에는 조달청 쇼핑몰에 없는 제품을 꼭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양이나 규격을 조금 변경해서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지역업체도 등록되어있지 않는 물품을 설계서나 규격서에 반영하여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역업체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큰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은 필요함

마.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후 발주단계에서 검토하는 경우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많음.(이는 발주는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업체 수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분할 발주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아래의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며 동 조문 제2항에서도 분리나 분할발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분할이나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분할 분리발주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이 나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래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①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예산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건의안
(신설)	제5조의2(업무처리 매뉴얼)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동매뉴얼을 적용토록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부서별 구매 매뉴얼 마련

- 일반적으로 지역업체에 관한 수주의 확대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관계 공무원들의 지역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작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실무자들이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각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등 부서별로 검토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시계열 방식으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한 발주를 하는데 망설임이나 주저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위 조례개정안을 근거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이 동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을 확대할수 있음 .

※ 매뉴얼 (안) : 별첨

바. 충청남도 소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발주자에게 정보제공

- 충청남도 발주기관이나 충청남도 국가출연기관, 국가기관 등은 충남업체 수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에 역량있는 업체가 없다고 분석됨(역량이 있는 업체가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사실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발주부서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서울에 있는 알려진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지역업체를 업종별로 정리하여 발주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 아울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에도 업체 현황을 탑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평가하고 역량있는 지역업체를 널리 알리고 수준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업체 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업체들의 동의하여 공개해야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든다면 업종, 업태, 연락처, 주소, 대표자, 납품실적, 설립연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적절한 동의나 협의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임.

사. 국가기관 및 국가공기업 등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방안 마련

-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 많을수록 전체발주금액 중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의 지리적 위치 및 소재기관의 수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지역업체의 체감도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중으로 체감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임
- 그동안 많은 협의와 협조를 요구해 왔을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별 발주계획을 분석하여 지역업체 수주 목표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지역업체 수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아. 우수지역 업체 및 발주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지원강화

- 분석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에 우수한 업체가 없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거래를 하는 업체 중에서 업종별로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포상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별로 평가하여 공공구매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성과가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도 시상 등을 실시하여 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자. 지역업체 수주활성화를 위한 인력보강

-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청 내에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음
-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별

도의 부서(신기술 플랫폼팀 6명)를 만들어 운영 중임.

- 물론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도 지역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 시·도 중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별도의 전담인력 (1-2명)이라도 증원을 통하여 전반적인 상황관리와 수주확대 대책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앞에서 언급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인력으로 도 활용할 수 있음.

차. 기획재정부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3 개정 건의

-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조달청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물품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지역 업체가 조달청 쇼핑물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쇼핑물에 등록하지 않은 충남지역 내 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 현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433개 품목 중 무려 112개 품목이 충청남도 지역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달청에서 체결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구매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가장 좋은 방법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제2호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는 것임.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삭제)

나. 다수공급자계약(삭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만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삭제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업체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행	개정 건의안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5 (생략) ②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설)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②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7.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특정물품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관할구역내에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없는 경우</u>

V. 민간위탁계약 개선방안

1. 사무위탁 개요

1.1 기관간 위탁

■ 국가사무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¹⁾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음
- 다시,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음
 - 그리고 이 경우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정부조직법 제2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은 조직법적인 수권권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권한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민간위탁의 규율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사무

- 「정부조직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음
 - 법리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이라 하고, 그 집행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나눌 수 있을 것임
 - 결국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국가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됨
-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고 하여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즉 위임기관의 승낙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규칙에 의하여서만 재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²⁾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원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즉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1.2 민간위탁 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은 요컨대 ‘私人에 대한 위임’ 이라 표현될 수 있음
- 행정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하지만 전술한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을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음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기관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한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위 사무들을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동 「규정」은 이외에도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방법, 지휘·감독, 사무편람의 작성, 처리 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의의를 정의하자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전)하여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수행(공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³⁾

- 행정학은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위임 내지 위탁이라고 보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사무나 사업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직접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 라고 하기도 함⁴⁾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순수한 지방사무 민간위탁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개별법령(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271쪽.

4) 이성우,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제7권 제3호), 1998, 35쪽;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31쪽;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제7권 제3호), 1998, 89쪽 등.

- 오수 · 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사업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운용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사무의 위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의 운용규정

- 행정재산 민간위탁의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재산의 민간위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는 법 제27조에서 위임 관리위탁의 세부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수탁자격: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함
 - 관리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함
 - 이용료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2 충청남도 민간위탁 현황(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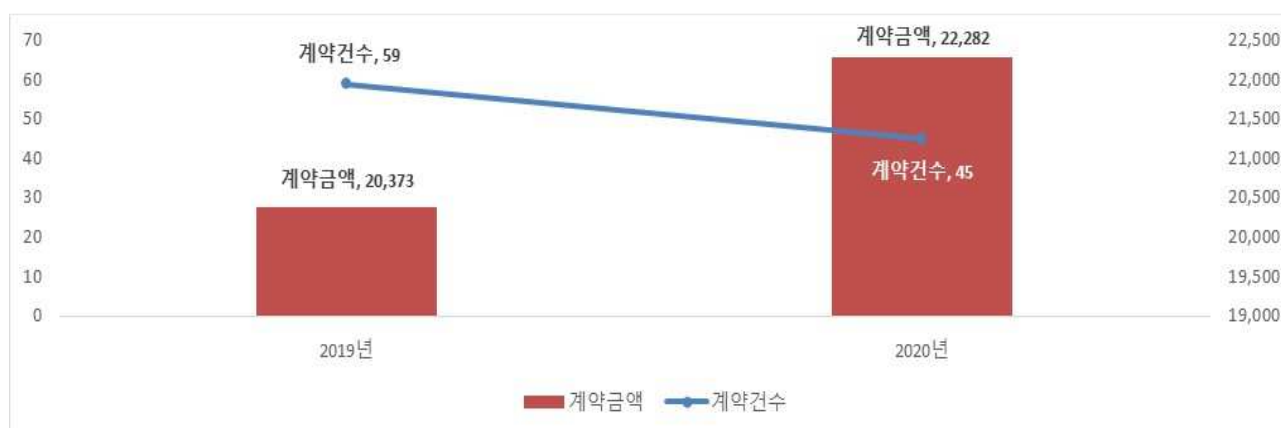
2.1 민간위탁 현황 분석결과

- 2019년~2020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2019년 59건 24,244,641천원, 2020년 45건 26,374,075천원임
- 2019년 대비 2020년 위탁 계약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계약금액은 상승하였음

<표 39> 충청남도 2019- 2020년 민간위탁 계약현황

(단위: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약건수	59	45	감소
계약금액	20,373,344	22,281,505	증가



- 위탁계약 건수의 감소원인은 통합발주가 진행되거나, 2019년에 진행된 민간위탁계약이 2020년에는 발주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보건정책과에서 진행된 ‘한센병관리진료사업’과 ‘한센병환자재활사업’ 민간위탁사업이 2020년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으로 통합 발주됨

<표 40> 2019- 2020년 민간위탁 통합발주 사례

(단위: 천원)

사업명	2019년	사업명	2020년
한센병관리진료사업	100,000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137,000
한센병환자재활사업지원	37,000		
합계	137,000	합계	137,000

- 2019년에만 발주된 사업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표 41> 2019- 2020년 민간위탁 통합발주 사례

(단위: 천원)

발주부서	민간위탁 계약명	기간	금액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9.05. ~ 19.12	60,000
농식품유통과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19.06. ~ 19.12	50,000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사업	19.06. ~ 19.12	50,000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18.05. ~ 19.12	500,000
사회복지과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19.01. ~ 19.12.	270,000
여성가족 정책관	충남여성자치대학	19.07. ~ 19.12.	15,000
합계			945,000

• 계약금액 증가원인은 단일 계약건의 계약금액의 상승에 있음

- 동일 민간위탁 계약에 대해 2019년 대비 2020년 출산보육과 1,111,928천원이 상승하였으며, 경제정책과 882,000천원, 장애인복지과 221,273천원이 증가함

<표 42> 충청남도 2019- 2020년 동일 민간위탁 계약금액 변화

(단위:천, 천원)

구분	계약건명	2019년	2020년	증감
출산보육 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8,322	997,724	+ 589,402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410,000	410,000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373,000	373,000	-
	충남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66,740	66,740	-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76,708	737,170	+ 60,462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23,372	667,616	+ 44,244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23,372	705,616	+ 82,244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000	469,358	+ 301,35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19,782	154,000	+ 34,218
	소계	3,469,296	4,581,224	+ 1,111,928
장애인 복지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271,297	1,311,362	+ 40,065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100,000	1,248,500	+ 148,500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500,000	1,532,708	+ 32,708
	소계	3,871,297	4,092,570	+ 221,273
경제정책과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00	900,000	+ 700,00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지원 사업	280,000	462,000	+ 182,000
	소계	480,000	1,362,000	+ 882,000

2.1 민간위탁 계약 세부내역

■ 충청남도 2019년 민간위탁 계약 내용

<표 43> 충청남도 2019년 민간위탁 계약내용

(단위: 천원)

순번	발주부서	민간위탁 계약명	기간	금액
1	여성가족 정책관	충남여성자치대학	19.07. ~ 19.12.	15,000
2	공동체 정책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9.01. ~ 21.12.	1,036,000
3	안전정책과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9.01. ~ 20.12.	300,000
4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01. ~ 20.12.	408,322
5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19.04. ~ 22.03.	410,000
6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03.03. ~ 계속.	373,000
7		충남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9.01. ~ 23.12.	66,740
8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5.07. ~ 20.07.	676,708
9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5.07. ~ 20.07.	623,372
10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9.08. ~ 24.07.	623,372
11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8.01. ~ 20.12.	168,000
1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9.05. ~ 19.12.	119,782
13	노인복지과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16.10. ~ 19.12.	230,000
14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19.01. ~ 23.12.	87,000
15	사회복지과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19.01. ~ 19.12.	270,000
16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8.05. ~ 23.04.	1,271,297
1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8.05. ~ 23.04.	1,100,000
18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7.01. ~ 22.01.	1,500,000
19	보건정책과	한센병관리진료사업	17.01. ~ 19.12.	100,000
20		한센병환자재활사업지원	17.01. ~ 19.12.	37,000
21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18.07. ~ 20.12.	612,666
2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18.07. ~ 19.12.	112,000
23		재난의료지원지원차량 지원	16.08. ~ 19.10.	6,000
24	건강증진 식품과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19.04. ~ 21.12.	308,412
2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 자살예방센터운영)	17.01. ~ 19.12.	1,045,500
26		광역치매센터 운영	19.08. ~ 22.08.	604,997
27	경제정책과	충청남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7.02. ~ 19.12.	200,000
28		마을기업 컨설팅 및 지원 사업	19.02. ~ 19.12.	280,000

<표 44> 충청남도 2019년 민간위탁 계약내용

(단위: 천원)

순번	발주부서	민간위탁 계약명	기간	금액
29	일자리 노동정책과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18.01. ~ 20.01.	570,000
30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19.01. ~ 21.12.	140,000
31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19.01. ~ 20.12.	160,000
32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19.08. ~ 21.12.	410,000
33	자치행정과	120충남콜센터	18.03. ~ 20.03.	283,000
3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9.01. ~ 21.12.	299,000
35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사업	17.01. ~ 19.12.	30,000
36	인사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18.12. ~ 21.12.	1,400,000
37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	2018 ~ 2037	2,000,000
38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9.05. ~ 19.12	121,000
39		충남관광모니터단 육성	19.05. ~ 19.12	20,000
40		충남관광아카데미	19.05. ~ 19.12	10,000
41		관광두레마을 시범사업육성지원	19.05. ~ 19.12	60,000
42		충남관광 불편사항 개선 지원사업	19.08. ~ 19.12	500,000
43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등 운영	19.02. ~ 19.12	200,000
44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19.02. ~ 19.12	30,000
45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19.02. ~ 19.12	20,000
46		관광홍보용 사진 공모전	19.02. ~ 19.12	20,000
47		충남관광 UCC공모전	19.02. ~ 19.12	30,000
48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19.04. ~ 19.12	50,000
49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 일본관광객유치 마케팅	19.04. ~ 19.12	100,000
50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마케팅	19.04. ~ 19.12	100,000
51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19.04. ~ 19.12	30,000
52	농식품유통과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19.06. ~ 19.12	50,000
53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사업	19.06. ~ 19.12	50,000
54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18.05. ~ 19.12	500,000
55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19.01. ~ 19.12	135,400
56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19.01. ~ 19.12	199,776
57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9.05. ~ 19.12	60,000
58	교통정책과	충남 광역이동지원 센터 운영	19.10. ~ 22.09.	200,000
59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 방역교육	17.04. ~ 19.12.	10,000
합계			59건	20,373,344

■ 충청남도 2020년 민간위탁 계약 내용

<표 45> 충청남도 2020년 민간위탁 계약리스트

(단위: 천원)

순번	발주부서	민간위탁 계약명	기간	금액
1	공보관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20.03. ~ 20.10.	212,500
2	안전정책과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9.01. ~ 20.12.	300,000
3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01. ~ 20.12.	997,724
4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19.04. ~ 22.03.	410,000
5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00.03. ~ 계속.	373,000
6		충남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9.01. ~ 23.12.	66,740
7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5.07. ~ 20.07.	737,170
8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07. ~ 24.12.	667,616
9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9.08. ~ 24.07.	705,616
10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01. ~ 24.12.	469,358
1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0.05. ~ 20.12.	154,000
12	노인복지과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20.01. ~ 22.12.	230,000
13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19.01. ~ 23.12.	87,000
14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8.05. ~ 23.04.	1,311,362
15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8.05. ~ 23.04.	1,248,500
16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7.01. ~ 22.01.	1,532,708
17	보건정책과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19.07. ~ 22.06.	137,000
18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18.07. ~ 20.12.	746,400
19		충청남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20.03. ~ 22.12.	112,000
20		충청남도 재난의료차량(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19.10. ~ 22.10.	6,000
21	건강증진 식품과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19.04. ~ 21.12.	288,412
2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0.01. ~ 22.12.	1,076,570
23		광역치매센터 운영	19.08. ~ 22.08.	616,029
24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19.08. ~ 21.12.	600,000
25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18.01. ~ 20.03.	95,000
26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19.01. ~ 21.12.	180,000
27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19.01. ~ 20.12.	190,000
28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9.01. ~ 21.12.	301,000
29		120충남콜센터 운영	20.04. ~ 22.03.	310,000
30	인사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18.12. ~ 21.12.	1,500,000

<표 46> 충청남도 2020년 민간위탁 계약리스트

(단위: 천원)

순번	발주부서	민간위탁 계약명	기간	금액
31	공동체정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9.01. ~ 21.12.	1,400,000
32		사회혁신센터운영	20.11. ~ 22.12.	849,000
33	사회적경제과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03. ~ 22.12.	900,000
34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20.02. ~ 20.12.	462,000
35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18.01. ~ 37.12.	1,500,000
36	관광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0.02. ~ 21.12.	71,000
37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20.02. ~ 20.12.	150,000
38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20.02. ~ 20.12.	30,000
39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01. ~ 20.12.	30,000
40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 일본관광객유치마케팅	20.01. ~ 20.12.	10,000
41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마케팅	20.01. ~ 20.12.	50,000
42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20.01. ~ 20.12.	30,000
43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20.02. ~ 20.12.	137,800
44	교통정책과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19.08. ~ 22.07.	990,000
45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생물 방역교육	20.01. ~ 22.12.	10,000
합계			45건	22,281,505

3.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

가. 공유재산 대부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혼재된 경우 처리방법 부재

-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재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된 규정이 없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인 마을 회관에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마을회관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오락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민간위탁의 영역에 해당되어 위탁자 선정절차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나.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구체화 되어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훈령에는 민간위탁 경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없다면 이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사후정산에 관하여도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다. 민간위탁 경쟁시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 충남도의 경우 민간위탁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공모를 하는 경우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관한 가격입찰 (특히 공유재산의 위탁과 혼재된 경우) 문제가 감사등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제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라. 민간위탁 기간연장, 불이행시 패널티 적용, 위탁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없음

- 민간위탁 불이행시 일정기간 당해기간과의 민간위탁 계약을 할수 없도록 하는 조례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 민간 위탁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수 있음

마. 사후정산이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근거가 미약

- 민간위탁에 관하여 사후정산이나 위탁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사후정산의 절차가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4.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마련

-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함

가 .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원가를 산정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억원이상 민간위탁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외에도 원가계산 전문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하여 사후정산을 강화

나 . 민간위탁 경쟁공모시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

- 가격입찰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공고를 통하여 가격 제안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토록 함

다. 민간위탁 불이행시 페널티 부여근거 마련

- 감독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민간위탁을 위탁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충청남도과 일정기간 위탁계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다른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거나 공유재산의 위탁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함

(충청남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u>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공유 재산사용과 민간위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 2 (민간위탁 금액의 산정)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하여 예정금액을 미리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필요한 경우 공모공고를 통한 가격 제한 내용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5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의 조정, 위탁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 한다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사업 연도마다 <u>집행내용을 증빙하는 정산서를</u> 작성하여 <u>도지사가 지정하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거나</u>,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u>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에서 배제토록 할 수 있다.</u>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록

1. 충남지역업체 업무처리매뉴얼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2021. 12.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사업부서 / 계약부서]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공사	사업예산 편성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인 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목적물, 시기,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설계·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시설비’로 예산 편성해야 함 ③ 하자구분이 용이하거나 분리·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함	1
	기본계획 / 설계	①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설계·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공사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해야 함 ② 혼재된 계약(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에 대해 계약을 분리할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물품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④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을 검토 시 분리발주 대상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2
	사전절차	○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결과를 따름	3
	발주 (경쟁입찰)	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자체 발주를 원칙으로 함 ② 다음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함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 통신·전기 등 기타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③ 지역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해야 함 ④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9% 이상으로 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함 ⑤ 실적제한 공사의 경우 가능한 시공 실적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되,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정해야 함 ⑥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경우 요건이 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기술 등의 기술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4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공사	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함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하자구분 곤란 등은 제외) ▶ 천재지변, 계약의 해제·해지, 재공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계약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없거나, 시공품질 등 특수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18
	발주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해야 함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한시적 특례 :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한시적 특례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한시적 특례 : 추정가격 1.6억 원 이하) ② 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 중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	21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른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8
	계약	①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심사 시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29
	설계변경	○ 추가공사의 물량 발생 시 증가된 물량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액이 1억 원 이상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30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물품	사업예산 편성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 ▶ 목적물, 시기,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 ② 계약목적물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공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③ 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사 발주가 가능토록 시설비로 예산 편성해야 함	32
	기본계획	①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설계·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공사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해야 함 ※ 공사에 대해 물품 또는 용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② 혼재된 계약(물품+공사, 공사+용역)의 경우 분리 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물품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33
	사전절차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함 ② 규격서·사양서 등을 반영하는 경우 지역업체도 납품에 참여가 가능 하도록 특정규격으로 한정해서는 아니 되며 동등 이상 규격을 허용해야 함	34
	발주 (경쟁입찰)	①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발주해야 함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도시공사나 지하철 공사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 ②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 등에 입찰이나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주해야 함 ③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함 ▶ 충청남도(사업소 등 포함)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물품 ▶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등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물품 ▶ 교육지방자치단체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물품 ④ 실적이나 기술 또는 설비로 제한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 ⑤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충청남도 지역업체가 특수한 성능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요건이 충족되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35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물품	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함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하자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 천재지변, 계약의 해제·해지, 재공고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계약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없거나 시공품질상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지역업체와 견적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로서 견적 가격을 낮추어 계약을 하려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역업체만으로는 장애인 기업 등의 구매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47
	발주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해야 함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한시적 특례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② 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 중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	50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56
	계약	①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에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58
	수량변경	o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해당 수량을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분리한 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9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용역	사업예산 편성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인 사업 ▶ 목적물, 시기,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	72
		② 공사의 설계, 감리,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의 역무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편성해야 함	
		③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기본계획	○ 혼재된 계약(용역+공사, 용역+공사)의 경우 분리 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함	73
	사전절차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약부서와 협의해야 함	74
		② 특수한 기술 등을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기술로 한정하여 정하면 아니 되고, 동등 이상 기술을 인정 가능토록 하고 가능한 지역업체도 입찰 등에 참여가 가능토록 해야 함	
	발주 (경쟁입찰)	① 모든 용역은 조달청 등 외부기관에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발주함을 원칙으로 함	75
		②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함 ▶ 충청남도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일반용역 ▶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등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③ 실적이나 기술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많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규모나 방법을 정해야 함	
		④ 특수한 기술 등을 가진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구 분	단 계	확 인 사 항 (사업부서 / 계약부서)	페이지
용역	발주 (1인 견적 수익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함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천재지변,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이거나 재공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계약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 계약의 품질이나 특성 등으로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87
	발주 (2인이상 견적 수익계약)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해야 함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한시적 특례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음 ▶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사실상 없는 경우 ▶ 기타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88
	낙찰자 결정	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해야 함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94
		②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해야 함	
		③ 일반용역의 경우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해야 함	
		④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계약	①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에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96
	과업내용 변경	○ 당초 계약된 용역의 과업내용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도용역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 과업내용을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97

공 사 편

사업부서/예산부서	사업예산 편성 단계	공사
-----------	------------	----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아래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해서는 아니 되며, ‘시설비’로 예산 편성해야 한다.

-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공사의 설계·감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하자구분이 용이하거나 분리·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속 비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하여 예산절감, 사업의 하자구분 곤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단년도 계약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사업예산 편성



기본계획/설계



사전절차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



설계변경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 과업내용, 사업예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공사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 만약 공사에 대해 물품 또는 용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함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혼재된 계약(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에 대해 계약을 분리할 경우 계약목적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사와 용역 및 물품이 혼재된 경우로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목적물을 노무비의 비율만으로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해서는 아니 되고, 관련법령 등과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물품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을 검토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관리, 예산 등의 이유를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물리적(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발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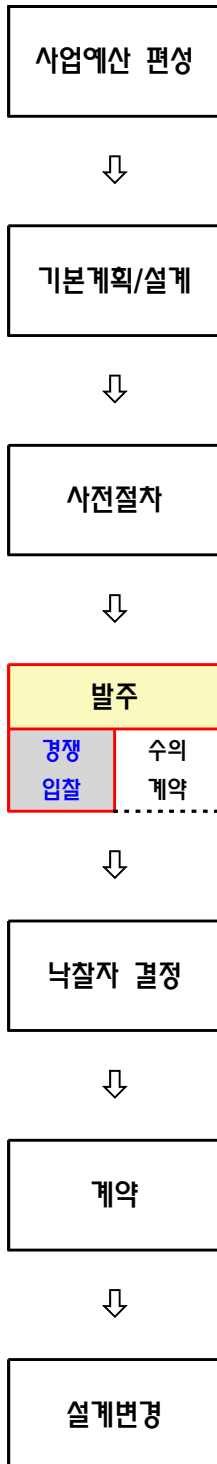
※ 통합으로 발주하면서 분리발주 대상(공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토록 하거나, 실제 하도급을 인정하는 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사업부서 / 계약부서	사전절차 단계	공사
-------------	---------	----



□ 주요내용

-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 해당하는 공사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 나. 반영예정금액이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목에 따라 신기술 등의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영금액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1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억 원 이상 공모절차를 준용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신기술등을 선정하고 이 경우에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가산점을 정량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 라. 사업부서에서는 신기술의 공모를 피하기 위하여 법령상 공사에 해당되는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조달청 등에 입찰 및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
- (2)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 (3) 통신·전기 등 기타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제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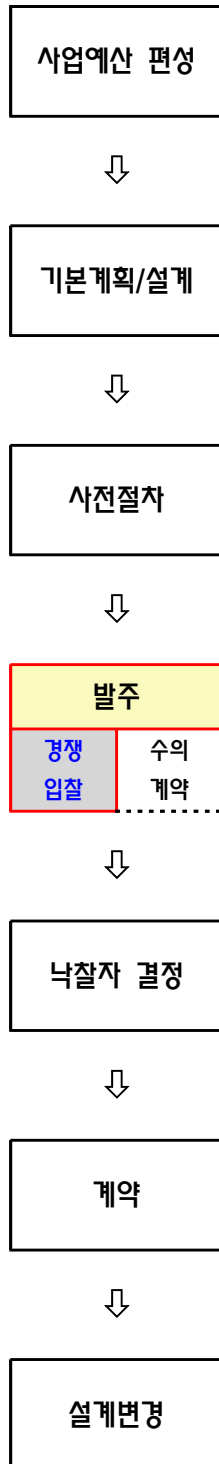
※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그 업체는 제외함

라.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9%이상으로 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부서 / 사업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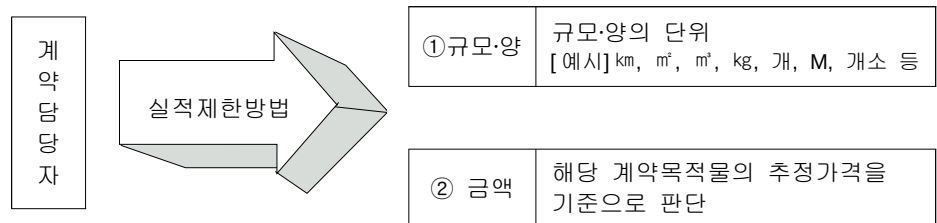
발주단계 - 경쟁입찰

공사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 의한 공사)에 한하여 실적을 제한하고 별표1에 의한 해당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심의회를 거쳐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인정받아야 중복제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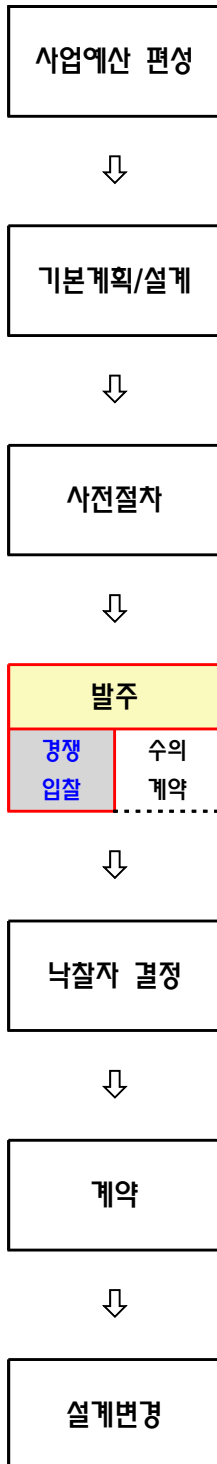
바. ‘마’에 따라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경우 가능한 시공 실적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되,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규모 등을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 ①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바,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업체의 실적 현황까지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 ②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함

사.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시공 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한도를 정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모를 통하여 신기술이나 특허를 선정한 경우 계약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신기술·특허공법(신기술 등) 보유자와 사전 협약을 해야 한다.

자. 신기술 등을 공모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협약에 포함 될 내용(기술사용료 등)을 미리 공모 공고에 포함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차. 해당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2)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카. 해당 신기술 등을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고 분리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나 신기술을 제외하거나 재공모 하여 신기술 등을 다른 유형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한 지역업체(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또는 지역제한 입찰에 부쳐야 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하 공사

(2) 전문공사·기타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3.0배 이상		8.0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B.2.0배 이상		7.2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C.1.5배 이상		6.4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D.1.5배 미만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 중인 관급공사		A.1건 이하		8.0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B.2건		7.2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C.3건		6.4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D.4건 이상		5.6점
	경영상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유동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 ~ AA- A+ ~ A- BBB+ ~ BBB- BB+ ~ 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 제재 처분 등,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사업법·정보통신공사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 2] × 70%=점수	
		㉡하자보수보증 기간	(전차하자보수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흔 잡	㉢시간적충족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2] × 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 금액)×100= %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 대시설공사 추정금액] × 100= %		㉥× 70%=점수	
	④특허공 법등	㉦독점적 기술 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 70%=점수	
	특별 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5
			관이 고용창출	3회 우수기업 선정		+0.4
100대 우수기업			2회 우수기업 선정		+0.3	
으로 선정한 자			1회 우수기업 선정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참 고

입찰공고 [예시]

공사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0000000000공사
- 나. 위 치 : 00구 00동 0000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라. 공사개요 : 교량인상 및 인하, 교량받침 교체, 연단거리 확대 등
- 마. 총공사금액 : 370,080,000원
- 도급공사비 314,360,000원, 관급자재대 55,720,000원(도급자설치관급액)
- 바. 기초금액 : 314,360,000원(추정가격 285,781,818원)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A값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입찰자가 가격경쟁 없이 100% 투찰하는 항목으로써 가격평가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항목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020. 4. 2., 시행 2020. 4. 13.)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text{평점(점)} = \text{O-O}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예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광역시자치체)의 범위를 명시

▶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임을 명시하고 정확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내역을 명시함

나. 이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건설관리사업소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해야** 합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내역

연번	신기술(특허공법) 명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1	0000000000000000 공법	000000(주)	특허 제00- 12345호

2) 문의사항 : 충청남도 000000 000000 / ☎ 041-000-0000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충청남도 000000 000000 / ☎ 041-000-0000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10. 27.(수) 10:00 ~ 2021. 10. 29.(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도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3. 라.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하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는 입찰자의 편의와 변경공고 등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받는 경우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고, 제출마감 일시는 근무일(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제외)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야 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10. 29.(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해야 함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시설물유지관리업	285,781,818원	10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사후정산 대상항목 및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하
고 사후정산해야 함을 명시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4019271	3,215,673	4,338,989	329,606	2,217,705	3,917,29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
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 **85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같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 다. 낙찰자는 우리 도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 라. 우리 도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충청남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 충청남도 00000 00000(☎ 041-000-0000),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0000000(☎ 041-000-0000),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000(☎ 041-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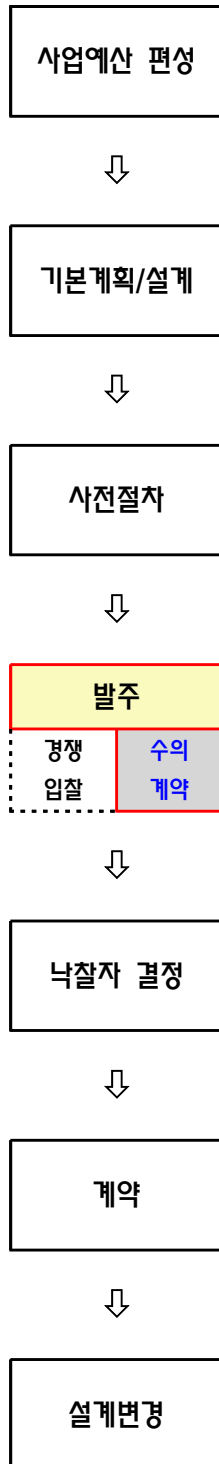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충청남도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공사
------	-------------	----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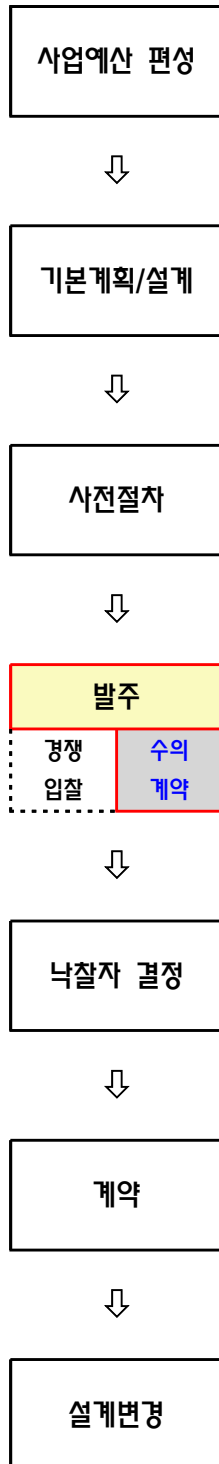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모든 공사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 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라·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결과 1인만 참여한 경우로 재공고해도 유찰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이 가능하되 사업부서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1)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없거나 시공 품질 등 특수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 (2) 다른 지역업체와 가격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로서 가격을 낮추어 계약하려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공사
------	-------------	----



다. '가'의 수의계약 대상 중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다음의 사유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는 95점 이상,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는 90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1) 2) 3)은 지역업체 의무수의계약 적용의 예외로 한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 기술·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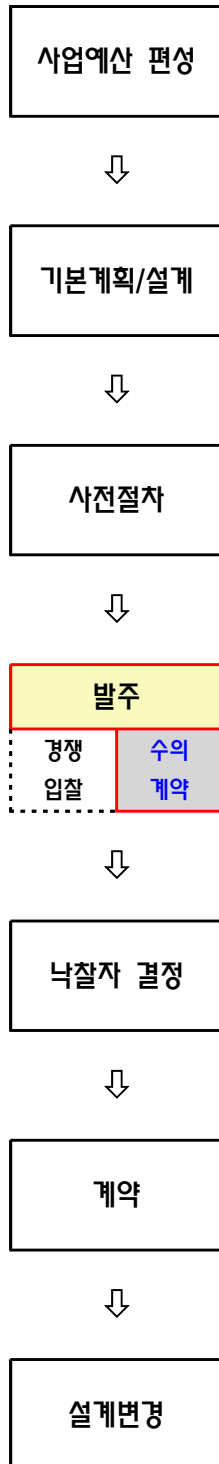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공사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3.0배 이상		8.0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B.2.0배 이상		7.2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C.1.5배 이상		6.4점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D.1.5배 미만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 중인 관급공사		A.1건 이하	8.0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B.2건	7.2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C.3건	6.4점	
		▪진행 중인 관급공사		D.4건 이상	5.6점	
	경영상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150% 이상	AAA ~ AA-	8.0점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B.120% 이상	A+ ~ A-	7.2점		
업체 유동비율		C.100% 이상	BBB+ ~ BBB-	6.4점		
		D. 70% 이상	BB+ ~ B-	5.6점		
		E. 70% 미만	CCC+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 제재 처분 등,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 100= %		[(㉠+ ㉡) / 2] × 70%=점수	
		㉡하자보수보증 기간	(전차하자보수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 100= %			
	②흔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 100= %		[(㉢+ ㉣) / 2] × 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 100= %			
	③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 금액)× 100= %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 대시설공사 추정금액] × 100= %		㉥× 70%=점수	
	④특허공 법등	㉦독점적 기술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 70%=점수	
		의 공사규모비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 100= %			
	특별 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5
관이 고용창출			3회 우수기업 선정		+0.4	
100대 우수기업			2회 우수기업 선정		+0.3	
으로 선정한 자			1회 우수기업 선정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공사
------	-------------	----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업체를 충청남도 지역업체로 제한(지역제한)해야 한다.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통신·전기 등 기타공사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⁵⁾ (~ '21. 12. 31.)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6억 원 이하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충청남도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지역제한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구역이 충청남도인 경우 충청남도로 지역제한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충청남도외 인접 시·도(대전, 세종 중 선택가능)로 제한 가능
- 지역제한은 지역에 업체의 본사(본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있어야 함
- 수의계약 선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역업체이어야 함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해당지역에 있어야 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30.)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00000000000 시설개보수 공사

나. 위 치 : 000000000000000000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 00000 외 15개소 시설개보수

마. 공사예정금액 : 46,640,000원(추정가격 42,400,000원, 부가세 4,240,000원)

바. 기초금액 : 46,640,000원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찰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불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의 범위를 명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0000과 (☎ 000-0000)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1. 11. 10.(수) 10:00 ~ 2021. 11. 12.(금) 10:00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라.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1. 11. 12.(금) 11:00 / 000 000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공고문 5.에 따른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명시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가. 의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3. 가.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5,343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대상항목 및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하고 사후정산해야 함을 명시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라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설명서.설계내역서,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000 / ☎ 000-0000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민원-공익신고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 및 기타사항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 000 주무관/ ☎ 000-0000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000 주무관/ ☎ 000-0000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 1588-0800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단계	공사
------	-----------	----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문화재 수리 :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

※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은 턴키나 기술제안, 대안입찰도 할 수 있음

나. '가'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인도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1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해당지역	+1.0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영업활동기간	+0.5	•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⁶⁾에 따라 공사의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업부서	계약 단계	공사
------	-------	----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심사 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공사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기성 및 사업 준공 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정해야 한다.

-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사업예산 편성



기본계획/설계



사전절차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



설계변경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및 계약심사 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심사를 해야 한다.

(1) 충청남도 및 공기업 등

: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자치구

: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가'에 따라 설계변경 시 별도로 발주해야 할 추가공사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1회 공사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추가공사는 하자구분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른 설계변경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 시, 증가된 물량에 따른 1회 계약금액 증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판공일

사업부서	사업예산 편성 단계	물품
------	------------	----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한 경우
- (2) 사업의 성격상 계약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목적이 달성되는 것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을 구매 또는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전체가 공사 관련 법령 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 (1) 수급자격을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 발주가 되도록 예산 편성해야 한다.

사업부서	기본계획 단계	물품
------	---------	----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 과업내용, 사업예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를 수급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공사로 발주를 해야 한다.

※ 만약 공사에 대해 물품 또는 용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혼재된 계약(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에 대해 분리할 경우 계약목적물 달성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목적물별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목적물을 노무비의 비율 등을 이유로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됨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한다.

- 종합공사 : 공사예정금액 40억원 이상중 자재비 4천만원 이상
- 전문공사 등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중 자재비 4천만원 이상

사업예산 편성



기본계획



사전절차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



수량변경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 해당하는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해 계약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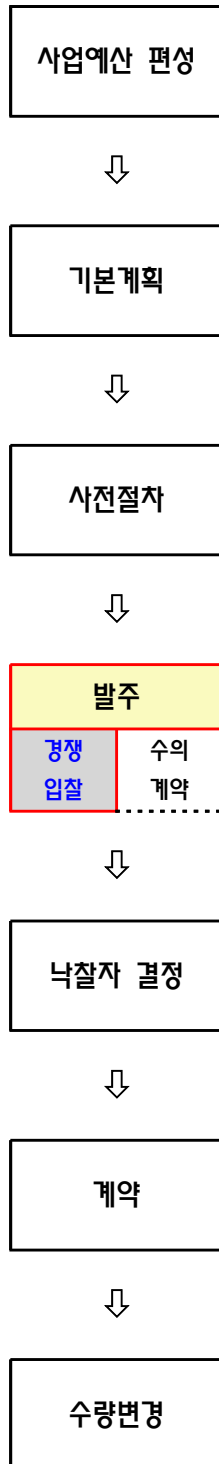
- ①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②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 ③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설비 등을 규격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규격으로 규격서를 정하면 아니 되고 동등 이상 규격을 인정 하도록 하며 지역업체 등도 납품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격서 등을 정하여 발주한다.

계약부서 / 사업부서

발주단계 - 경쟁입찰

물품



□ 주요내용

가. 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년도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 상대방 사이에 다음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발주 및 물품을 구매한다.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 다만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아래사항이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충청남도 지역 물품을 일반 입찰이나 수의 계약방식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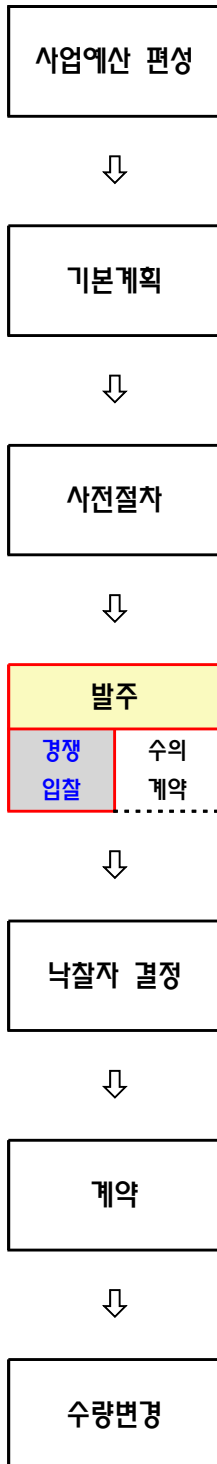
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역업체가 없거나 가격의 차이가 20%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대체 가능한 유사한 제품을 지역업체 중에서 구매한다.

- 이 경우 기업지원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종별 대체가능제품 생산 업체 목록을 통해 지역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가능한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다.

라.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한 지역업체 가산점 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마. 계약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조달사업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발주방식을 정한 경우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등에 입찰이나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주한다.



바.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주하려는 경우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1) 충청남도(사업소 등 포함)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물품
- (2)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등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물품
- (3) 교육지방자치단체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사. 전국입찰 대상 중 특수한 설비, 기술이나 실적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물품제조의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다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정해야 한다.

아.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신기술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특허제품 등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성능 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충청남도 지역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 지역업체 외의 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자. 기성품(완제품) 구매 시 입찰공고에 첨부하는 규격과 관련하여 계약부서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고기간 내 투찰자에게 납품하려는 물품의 규격적합 규격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게 하여 개찰 전에 규격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준수하되 여유 있게 공고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참 고	입찰공고 - 구매 [예시]	물품
-----	----------------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000000000000 방역물품(손소독제) 구매

나. 구매수량 : 61,408개(500~600ml) / 에탄올 70%이상함유, 규격서 참고

다. **기초금액 : 276,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마. 납품장소 : 3,838개소(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사. 기타사항 :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분할납품불가, 하자보증 1년(2%)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손소독제(세부품명 번호 5127061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광역시자치)의 범위를 명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4. 입찰일시 : 2021. 11. 9.(화) 10:00 ~ 2021. 11. 11.(목)10:00

5. 개찰일시 : 2021. 11. 11.(목) 11: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 추정가격 기준 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해야 함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건은 물품구매 입찰로 기술능력 평가 관련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10.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우리도 지역개발 채권(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 ※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등 관련 사항은 00000(000-0000),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00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붙임)재무관 귀하

물품 제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00000000000000 방송설비 제조·납품
- 나. 구매수량 : 구내방송장치 1식
- 다. **기초금액 : 227,1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 심사
- 마. 납품장소 : 000000
-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2년(3%)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2. 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 번호(10자리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광역시자치체)의 범위를 명시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4. 입찰일시 : 2021. 11. 9.(화) 10:00 ~ 2021. 11. 11.(목)10:00

5. 개찰일시 : 2021. 11. 11.(목) 11: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일반기업 87.995%, 수출우수기업(가점 0.2점) 87.945%, 수출우수기업 (가점 0.1점) 87.97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상의 낙찰하한율은 수출우수기업(가점 0.2점) 87.945%에 맞춰져 있으니 반드시 가격 입찰 시 낙찰하한율에 주의 하여 투찰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추정가격 기준 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해야 함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2])에 의합니다.
-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평가는 납품금액으로 평가하며 지방서의 규격을 기준으로 성능, 품질 등이 물품 규격 이상인 것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하며, 유사물품은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붙임」지방서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평가합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규격 명시된 것에 한함)로 같음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규격 명시된 것에 한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를 모두 첨부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8. 입찰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사후정산 대상항목 및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하
고 사후정산해야 함을 명시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 1,212,724원, 국민연금보험료 : 1,636,35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4,30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5,451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붙임 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우리도 지역개발 채권(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등 관련 사항은 00000(000-0000),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00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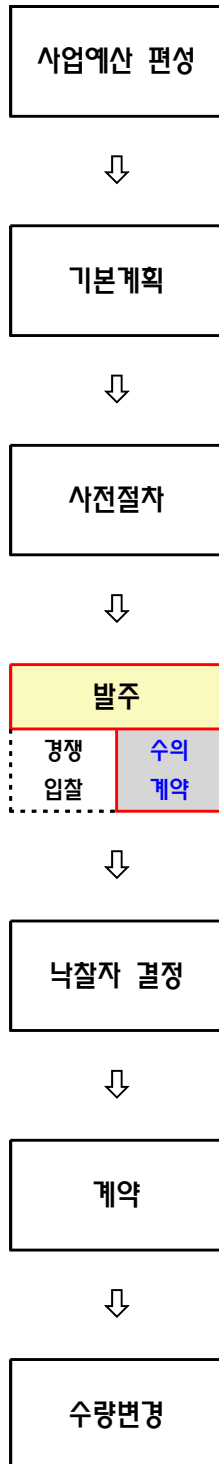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물품
------	-------------	----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한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물품 제조·구매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 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 라·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입찰공고 결과 참여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해도 1인 예상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계약부서에 사유서 제출)

- (1)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없거나 시공 품질상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다른 지역업체와 견적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로서 견적 가격을 낮추어 계약하려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 (3)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연간 수주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업체만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추정가격 2천만 원 (여성기업 등은 5천만 원)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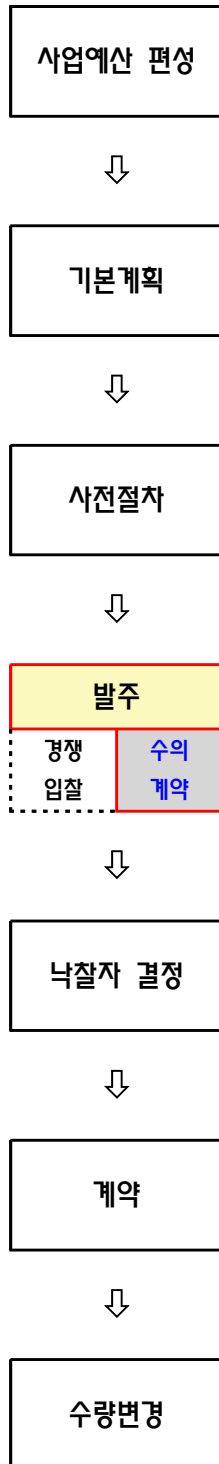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제외라고 표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충청남도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한다.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제외)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제외)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외)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제외)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외)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 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뒷부분에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 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⑧ 「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목욕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외)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제외 대상은 1인 견적 제외사유 ‘나’ 와 동일하다.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물품
------	-------------	----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 제출업체를 충청남도 지역업체로 제한해야 한다.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물품 제조·구매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한시적 특례가 (~ '21. 12. 31.)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 중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연간 수주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업체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지역제한

- 물품납품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이 충청남도인 경우 충청남도로 지역제한
- 물품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충청남도외 인접 시·도(대전, 세종 중 선택가능)으로 제한이 가능
- 지역제한은 지역에 업체의 본사(본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있어야 함
- 수의계약 선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역업체이어야 함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해당지역에 있어야 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30.)

참 고	수의 견적 제출 공고 [예시]	물품
-----	------------------	----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0000000000 제조·납품

나. 구입내역 : 붙임 과업지시서(제품사양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3,286,100(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입찰방법 : 소액(총액)견적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1. 10. 13.(수) 10: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1. 10. 2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10. 20.(수) 11:00 000000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결정방법: 소액(총액)견적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우리 구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은 견적서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견적서 제출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시설과 연동되어야 함에 따라 계약 시 **사회보장정보원 표준연계모듈 검증확인서(노인분야)**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불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pm 3\%$ 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본 물품구입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아.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명시

9.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0000000 (☎ 000-000-0000)

다.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0000000 (☎ 000-000-0000)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붙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단계	물품
------	-----------	----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포함)의 구매계약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단계	물품
------	-----------	----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 ‘가’ 또는 ‘나’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되,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에 “접근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60	평가위원이 평가
	용역 · 물품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계약부서	계약 단계	물품
------	-------	----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대상 물품제조 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에 전체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계약부서	수량변경 단계	물품
------	---------	----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분리되는 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 단,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도 시급성이 있거나 호환 등을 위하여 별도 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 없이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다.

참 고

종합쇼핑몰 이용방법(본청,사업소,자치구)

물품

※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의무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가능한 일반
수의계약이나 전자견적 방식을 활용하여 입찰 및 계약

상품검색



조달요청서
작성



납품요구



납품완료/
검사·검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접수



대금고지서
접수

□ 주요내용

① 상품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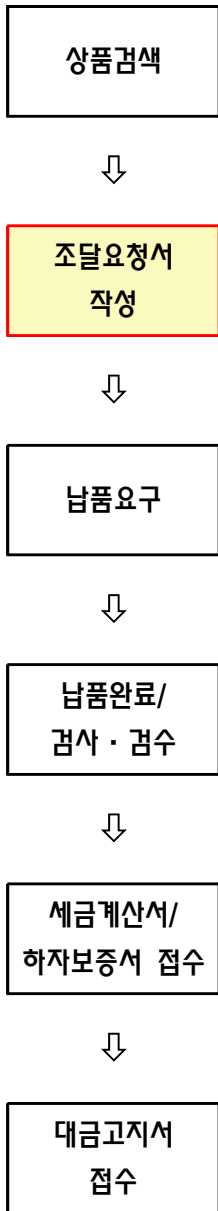
- 조달구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나라장터물품식별번호'와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달수수료 포함 유무 확인
- 화면 중앙상단의 상품검색을 사용하거나, 상품카테고리를 이용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 확인사항

- ▶ 물품의 상세내역, 납기와 인도조건 확인
- ▶ 필요 시 주문 전 납품업체에 문의하여 제품특성 및 납품 요구 사항 등 확인

참 고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물품
-----	------------	----



□ 주요내용

② 조달요청서 작성

- 2종 이상의 품목을 구매할 경우 검색된 구매요청 물품을 선택하고 요청수량을 입력하여 “장바구니 담기”를 선택하여 담기
- 장바구니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을 확인하고 우측하단 “재계산” 후 주문하기 선택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Nalajangteo Comprehensive Shopping Mall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the site logo and a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shows search results for '공기청정기' (Air Purifier). A red box highlights the '공기청정기' search results, and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장바구니' (Shopping Cart) button. The bottom section shows product details for two air purifiers, including specifications, prices, and a red box around the '장바구니' button.

상품검색



조달요청서
작성



납품요구



납품완료/
검사 · 검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접수



대금고지서
접수

□ 주요내용

③ 납품요구

- 주문서 작성을 선택하면 내자조달요청서 화면이 나타남
- 체크의 부분 입력 등 내자조달요청서 작성 후 저장/동의요청 버튼 클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ome > 마이페이지 > 수요기관 > 장바구니

주문관리 **내자조달요청서**

해당 요청서의 납품기한, 수수료 등은 납품요구시점에서 확정되므로 반드시 본합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 검수 및 사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서에 대한 대금 또는 수수료 고지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2단계경쟁을 거쳐 조달요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옵션으로 선택하여 단일 견으로 납품요구하면 설치비에 대한 다량구매에 의한 할인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할인을 적용을 원하시면 옵션(설치비)만 별도로 납품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입니다. 문서번호는 특수문자(., &, #, / 등)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입력시 한글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합납품으로 인하여 납품장소, 납품기한 등의 계약 관련 중요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첨부문서를 통하여 조달요청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는 필수항목입니다.

* 문서번호		* 작성일자	2020/10/23
* 문서가능	원본	* 수신자명	대전지방조달청

※ 실수요기관으로 계약서, 납품요구서, 대금청구서 및 고지서 등이 발송됩니다.
또한, 실수요기관에서 수령계약요청 및 납기변경 등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였음 ☐

[실수요기관정보]

수요기관명	대전광역시	담당자	오대석
담당부서명	회계과	담당전화	042-270-4352

[요청기관정보]

수요기관명	대전광역시	담당자	오대석
담당부서명	회계과	담당전화	042-270-4352

[사후만족도 평가담당자 정보]

* 평가담당자명		* 평가담당자 부서명	
* 평가담당자 이메일		☐ 올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내용	

※ 사후만족도 평가는 일정기간 계약 이행 후에(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수요기관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사후만족도 평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 제 99조 제 2항에 따른 공정계약서약서에 따릅니다.

[기안본문]

본문 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물자(※ 조달요청한도내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달물자 대금 및 수수료를 귀 공 고지서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납기 경과
시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가채무 관리법」 제18조 및 제 20조에
따른 귀 공의 조치에 따릅니다.

본문 2 별첨 : 1. 수요물자 명세서 1부
2. 견적서 1부
3. 그 밖의 조달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등.

[요청내용]

* 요청건명

회계명

기타사항

순환결제사용비용

희망공급업체지정

* 조합에 레미콘, 아스콘을 조달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사 중 희망하는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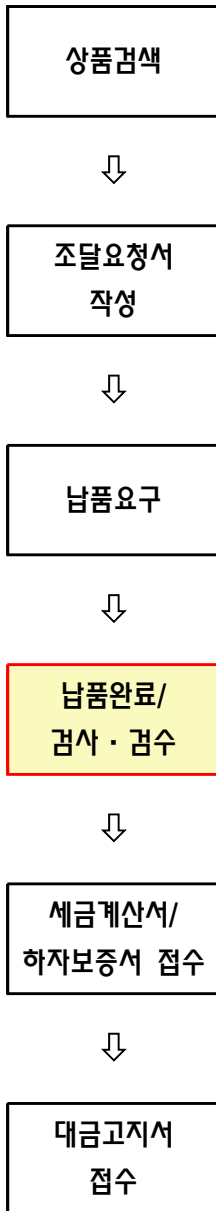
* 대지급 < 직불 > < 외부재정정보기 디브레인경우에는 직불, 대학지원 및 국고보조금 경우에는 대지급 or 직불 선택가능, 이외에는 대지급만 가능합니다.

선택지급가능률 %

* 대지급 < 직불 > < 외부재정정보기 디브레인경우에는 직불, 대학지원 및 국고보조금 경우에는 대지급 or 직불 선택가능, 이외에는 대지급만 가능합니다.

선택지급가능률 %

참 고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물품
-----	------------	----



□ 주요내용

④ 납품완료 / 검사·검수

- 검사검수요청서 출력 후 접수 : 검사처리입력 & 검수처리입력
- 검사처리 및 검수처리 입력 전 조달업체 계약이행 성적 조사 입력
- 접수한 검사/검수요청서에 대한 검사조서를 작성
- 나라장터 검사처리 후 검수처리 전 하자보증기간 확인 후 2년 이상일 경우 하자보증서 선 접수 후 검수처리 입력
- 물품납품 및 영수증 출력 후 전송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상품검색



조달요청서
작성



납품요구



납품완료/
검사 · 검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접수



대금고지서
접수

□ 주요내용

⑤ 세금계산서 / 하자보증서 접수

- 세금계산서 접수

- 하자보증서 접수

: 접수처리 화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서 요청해야 함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물품납품일자와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검색]

사이트맵 · 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입찰정보 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기타 공통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나의나라장터 나의메뉴 서함

나의 나라장터

받은 문서함 보낸 문서함 결재 문서함

문서명 [전체] [전체] 조회조건 [전체] 10건씩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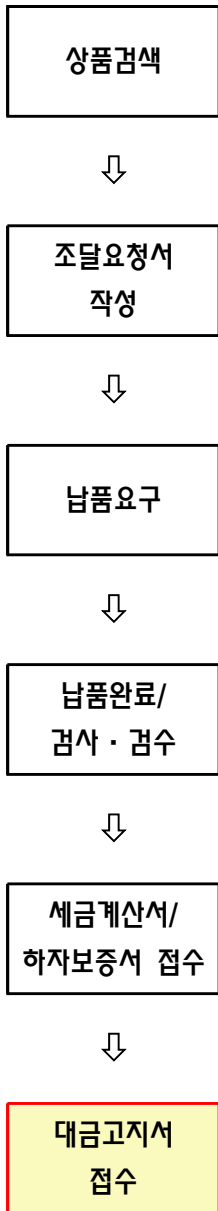
기간별 2020/09/25 2020/10/25 ※ 최대 1년 단위로 설정가능 개봉여부 [전체] 중요 문서 보기 삭제된 문서 보기 조회

187 개 문서 중 미 개봉된 2 개의 문서를 개봉처리 하여 주십시오 [Page 1 / 19]

원문확인의뢰 출력 통합문서 및 이관 메일로 전송 압축파일받기 삭제 접수

번호	송신자	문서명	문서번호/공시명	전송일자	문서상태	첨부	완료
1	C125816370101 주식회사 태영피씨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2020102242000105g3176851	2020/10/23 15:45:25	미개봉	0	☐
2	C305818606601 상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	비정형견자문서	swe91023-02	2020/10/23 11:52:24	개봉	1	☐
3	C305818606601 상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선금금형구서	swe1201023-01 노후지하차도(탄방) 조도개선 전 기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제조 구매	2020/10/23 11:02:18	개봉	6	☐

참 고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물품
-----	------------	----



□ 주요내용

⑥ 대금고지서 접수

- 조달요청서 출력 후 송신하고, 주문내역을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 '분할납품 요구 및 통보서'와 '대금고지서(수수료)'는 주문 후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물품내역]

물품대금 77,600,000 원
수수료총액 419,040 원

계약상품구분	3자단가계약상품		
물품분류번호	43222612	물품식별번호	22983896
종명	네트 워크스위치		
규격	네트 워크스위치, 엣지네트 워크스, AEN 20240, 16port		
수량	2	수량단위	대
단가	38,800,000	금액	77,600,000
납품일수	60	납품기한	2020/07/21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연도조건	현장설치도		
자산요청연번			

[첨부문서]

No.	문서명	파일명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수정 삭제 ▶ 송신 결제요청 ▶ 통계 목록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검색

*오대석님 *로그아웃 *MyWorkPlace *e-고객센터

· 사이트맵 · 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

입찰정보
물품
공사
▶
리스
외자
기타
공통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나의나라장터
나의메뉴
문서함

나의 나라장터

MyWorkPlace

나의업무대기현황

기관정보관리

인증서정보관리

조달업체정보관리

부경당전자관리

세물행정정보 업체조회

행정처분관리

원산지 위반현황

국가채권계무업체조회

결재선정보관리

업무현황

공지/게시/자료

나의 메뉴설정

알림이/뉴스레터

우수조달업체

찾시모니터링

받은 문서함
보낸 문서함
결제문서함

문서명

전체

전체

조회조건

전체

기간별

2020/09/23

2020/10/23

※최대 1년 단위로 설정가능

개봉여부

전체

197 개 문서 중 미 개봉된 4 개의 문서를 개봉처리 하여 주십시오 [Page 1 / 20]

원문확인인원
출력
통합문서 및 이관
메일로 전송
압축파일발기
삭제
접수

번호	송신자	문서명	문서번호/공시명	전송일자	문서상태	첨부	☑
1	C305818606601 상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선금급청구서	swe201023-01 노후지하차도(탄방) 조도개선 전 기공사 관급자재(수배건반) 제조 구매	2020/10/23 11:02:18	미개봉	6	☐
2	C305818606601 상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2020102342000105g3172579	2020/10/23 11:01:34	미개봉	0	☐
3	2120811300200 서물보증보험 주식회사	선금급보증서	00400410000020200457536 00 노후지하차도(탄방) 조도개선 전 기공사 관급자재(수배건반) 제조 구매	2020/10/23 10:47:41	미개봉	0	☐
4	C6300000G0060 대전광역시	물품 변경 계약서(송 인통보)	202007030EC01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전 기공 사 관급자재(수배건반) 제조구 매	2020/10/23 09:37:33	개봉	10	☐
5	A3068193053200 주식회사 다우엔티	물품변경계약용답서	202007030EC01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 전 기공 사 관급자재(수배건반) 제조구 매	2020/10/23 09:25:39	개봉	0	☐

납품업체
선정



업체선정기준
결정



제안요청



제안서 작성/
제출



업체평가/
업체선정

□ 처리절차

① (수요기관) 납품업체 선정

- 수요기관은 5개사 이상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 및 선정업체 물품 수량 체크 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제안요청함 담기 클릭 ⇨ 요청함명 작성 후 생성 ⇨ 해당 제안요청명 클릭 후 업체 구성완료 클릭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자계약 업체 중에서 자동 추천된 2인의 물품검토 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Nalajangteo Comprehensive Shopping Mall)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Home, Search, My Page,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나라장터종합쇼핑몰' and features a search bar with the text '나라장터종합쇼핑몰'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product listings with images, titles, and prices. The products are organized into a grid.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filters and a '장바구니' (Shopping Cart) section. The cart section shows a list of items with their quantities and prices, and a total price of 345,280,000 원.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선택해제' (Remove Selection), '제안요청할것임' (Request Proposal), '주문하기' (Order), '삭제' (Delete), '쇼핑계속하기' (Continue Shopping), and '관심상품등록' (Register Interest Product).

참 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물품
-----	------------------	----

납품업체
선정



업체선정기준
결정



제안요청



제안서 작성/
제출



업체평가/
업체선정

□ 처리절차

② (수요기관) 업체선정기준 결정

-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 평가방식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
 - * **A형** : 제안요청 대상업체 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일정한 규격,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경우
 - * **B형** : 제안요청 대상업체 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에 차이가 큰 경우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성능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Home > 마이페이지 > 수요기관 > 제안요청 > 제안요청할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제안요청서 작성

※수요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 제안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취소사유를 제안대상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일치 등이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관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입니다. 문서번호는 특수문자(+, &, #, ^ 등)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일련식 한글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회계과 - 25370	제안요청일시	2020/10/27	제안요청번호	20201001098
* 제안요청일시	2020/11/03	제안서마감일시	2020/11/03 14:00	제안요청업체	6개 업체
* 예산금액	58,240,000 원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대전광역시) * 지역업체 평가기준은 납품장소 소재지임(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평가)		
* 제안요청건명(사업명)	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공사(송충공영주차장) 관급자재(반수제) 구매설치				
* 선정기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지역업체 평가 적용 고시금액 기준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조달청기준 ☐ 수요기관기준 ? 불확하여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점자 처리방법					
비고					

제안요청 평가기준 수정

- ※ 기본평가항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만점이 되어야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한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 ※ 선택 평가항목중에 불필요한 분야 또는 배점이 0점인 분야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명(용도)	[종합평가] 가격A형	등록일자	2020/03/26
삭제			
구분	평가분야(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 기준
☐	기본	가격 (45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배점한도 [45 ~ 75]
☐	기본	적기납품 (10점)	납기지체 여부 (10점) 배점한도 [10 ~ 20]
☐	기본	품질검사 (5점)	품질검결과 (5점) 배점 [5점]
☐	선택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약자지원 평가 (5점) 배점한도 [0 ~ 5]
☐	선택	지역업체 (0점)	지역업체 여부 (0점) 배점한도 [0 ~ 5]
☐	선택	경영상태 (0점)	업체 경영상태 (0점) 배점한도 [0 ~ 5]

납품업체
선정



업체선정기준
결정



제안요청



제안서 작성/
제출



업체평가/
업체선정

□ 처리절차

③ (수요기관) 제안요청

- 수요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후 (공휴일 제외)로 정하여 제안요청
- 제안요청서 작성 후 문서일괄생성 및 송신 버튼 클릭 및 출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Home > 마이페이지 > 수요기관 > 제안요청 > 제안요청할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공 통 수급 공고

2단계 경쟁 공고등록

2단계 경쟁 공고목록

제안 요청

제안요청할

제안서참가관리

제안요청서목록

제안서평가

제안물품구매관리

제안평가결과조회

제안평가현황

제안요청서(기존)

제안요청응답(기존)

제안공고

제안공고등록

제안공고등록(레이아웃아스콘)

제안공고목록

제안서평가

제안평가결과조회

주문/배 송조회

주문/배송내역

변경내역

제안요청서 상세

※수요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본 제안건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취소사유를 제안대상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다수공급자계약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회계과 - 25370	제안요청번호	20201001098
제안요청일자	2020/10/27		
제안서참가일시	2020/11/03 14:00	* 제안마감일 이후에 제안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업체	6개 업체		
예산금액	58,240,000원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대전광역시) * 지역업체 평가기준은 납품장소 소재지임(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평가)		
제안요청건명(사업명)	송촌동 주차건물 건축물 건축공사(송촌공영주차장) 관급자재(방수재) 구매설치		
선정기준	[종합평가, 가격A형] 세부분가기준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합니다.		
지역업체 평가 격차 고시	지방계약법		
금액 기준 계약방법	조달청기준		
동점자 처리방법	이용		
동기제안 자동추첨프로그램	비고		

[첨부분시]

순번	문서명	파일명
1	설계도면	설계도면.z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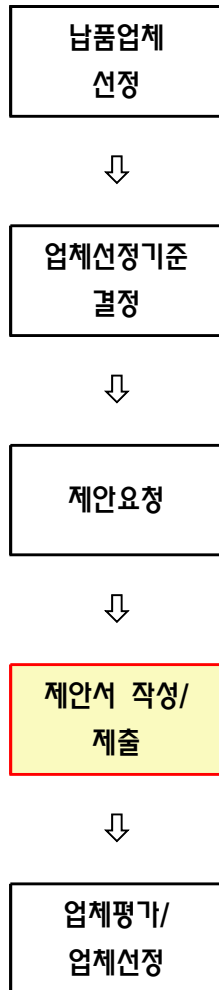
[제안요청내역]

※ 전자문서 송신 이후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요구납품일수는 조달청고시 2014-26호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부터 시행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요청물단가	상태	
주식회사 엘엔케이시설물	129-81-70316	고삼석	032-428-5970	57,20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604504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조팔페인트, LK-PRK-300,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5,000.0 원	-
(주)태선이앤씨 133-87-01386 김종한 043-283-7795 58,24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823793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삼화페인트공업, TSDF-1,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6,000.0 원	-
주식회사 동한기업 301-81-24433 오서현 043-233-0103 58,24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571258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강남화성, DH-PU-R3,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6,000.0 원	-
건영건설(주) 305-81-36789 송재룡 042-637-0251 58,24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715922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강남화성, KY-P300,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6,000.0 원	-
주식회사효성이앤씨건설 305-81-83109 김종식 031-339-1400 56,16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641078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삼화페인트공업, SHH-2,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4,000.0 원	-
(주)에이스하이텍 329-88-00141 김종희 062-954-9856 57,200,000 [송신완료]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분명	규격	수량	요청물단가	요구납품일수
1	23949594	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조팔페인트, ACE-RT300, 13mm, 주차장/ 옥상	1,040.0	55,000.0 원	-

제안요청취소 사유서작성 송신 목록

참 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물품
-----	------------------	----



□ 처리절차

④ (조달업체) 제안서 작성 / 제출

-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종합쇼핑몰 등록 단가 이하로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납품업체
선정



업체선정기준
결정



제안요청



제안서 작성/
제출



업체평가/
업체선정

□ 처리절차

⑤ (수요기관) 업체평가 / 업체선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안요청(제안서 평가) ⇨ 해당 건명 우측 평가버튼 클릭 후 평가인증서로 인증 후 평가진행
- 평가가 완료되면 우측 평가버튼에서 완료버튼으로 변환됨
- 업체 선정기준(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 >

조달청 | 나라장터 | 벤처나라 | 혁신장터 | 디지털서비스 | 오대석님 | 로그아웃 | 이용자정보 | 광바구니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전자문서접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전체(세부품명, 규격, 업체명 등) | 상세검색 | 도움말

e-고객센터 | 원격지원 | 원격지원(콜센터) | MAS불공정거래신고

Home > 마이페이지 > 수요기관 > 제안요청 > 제안서평가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공통수급공고
2단계경쟁 공고등록
2단계경쟁 공고목록
제안요청
제안요청합
제안평가항목관리
제안요청서목록
제안서평가
제안물품구매관리
제안평가결과조회
제안평가현황
제안요청서(기준)
제안요청응답(기준)
제안공고
제안공고등록
제안공고등록(레이아웃스킨)
제안공고목록
제안서평가
제안평가결과조회
주문/배송조회
주문/배송내역
변경내역

제안서평가 목록

제안요청번호: [] 문서번호: []

제안요청건명: [] 제안요청일자: 2019/10/28 ~ 2020/10/27 검색

[검색건수: 54건] 10 목록고침

No.	제안요청번호	문서번호	제안요청건명	업체수 (응답/요청)	제안요청마감일시	진행단계	평가	초기화
1	20201001098	회계과 - 25370	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공사(송촌공영주차장) 관급자재(발수재) 구매설치	0 / 6	2020/11/03 14:00	마감전	완료	
2	20201000013	회계과 - 23423	방동대교 보수보강공사 관급자재(교량안전난간) 구매설치	2 / 2	2020/10/13 14:00	평가완료	완료	
3	20200901084	회계과 - 22966	갑천유동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2차) 관급자재(태양광 보안등) 구매설치	3 / 5	2020/10/08 10:00	평가완료	완료	
4	20200901016	회계과 - 22115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1단계) 전기공사 관급자재(LED플라드조명) 구매	4 / 4	2020/10/06 10:00	평가완료	완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영문

사업예산 편성



기본계획



사전절차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



과업내용 변경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분리·분할 발주토록 예산 편성해야 한다.

- (1) 다른 법령(전기·통신·소방 등)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한 경우
- (2) 사업의 성격상 계약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설계, 감리,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의 역무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하되,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나'와 '다' 이외에 기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라 적절한 편성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사업부서/예산부서	기본계획 단계	용역
-----------	---------	----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 과업내용, 사업예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혼재된 계약(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에 대해 분리할 경우 계약목적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목적물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 분리가 하자구분 곤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목적물을 노무비의 비율 등만으로 계약 목적물을 물품이나 용역 등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공사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4905, 2021.11.23.)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사업예산 편성



기본계획



사전절차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



과업내용 변경

□ 주요내용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 해당하는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 사전에 계약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

3.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용역

①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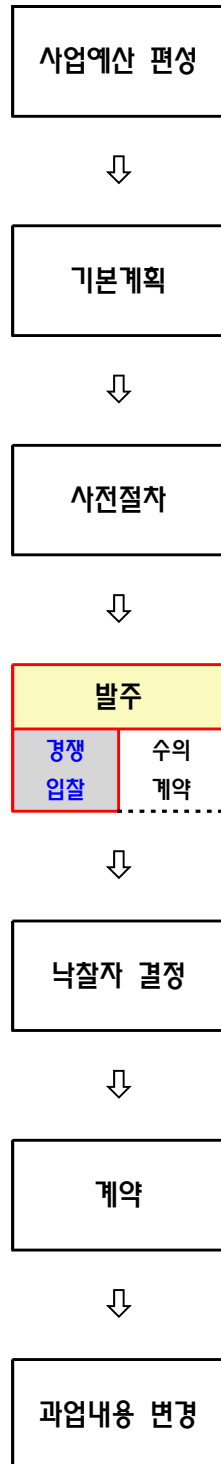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기술 등을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규격이나 기술로 한정하여 정하면 아니 되고 동등 이상 기술을 인정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지역업체도 입찰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격 등을 정한다.

계약부서 / 사업부서	발주단계 - 경쟁입찰	용역
-------------	-------------	----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용역을 조달청 등 외부기관에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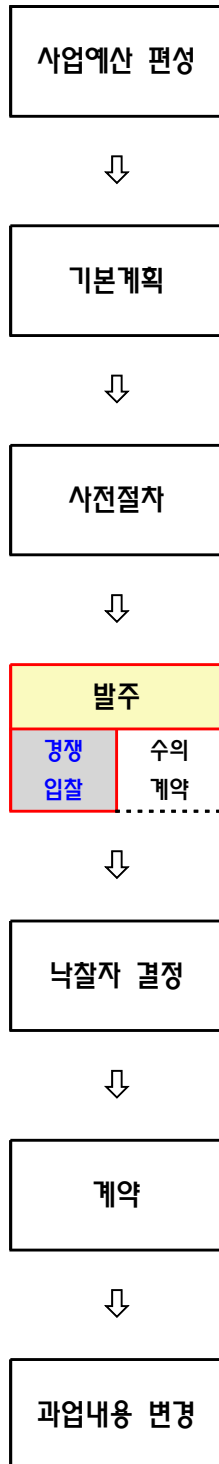
- (1) 충청남도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일반용역
- (2)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 등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일반용역
- (3)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4)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다. 계약 및 사업부서 담당자는 전국입찰 대상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적이나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할 수 있다.

- (1) 추정가격이 2.1억 원 이상인 용역계약일 것
- (2) 특수한 기술 등이 요구되는 경우

라. '다'에 따라 실적이나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정한다.

※ 이 경우 지역업체의 실적이나 기술의 보유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함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수한 기술 등을 가진 자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가능한 지역업체들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년도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 고	입찰공고 - 기술용역 [예시]	용역
-----	------------------	----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000000000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116,0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현 장 : 충청남도 00 0000000000

바. 용역기간 : 계약 후 90일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예외일 경우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광역시자치체)의 범위를 명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1. 8. 27.(금) 10:00 ~ 2021. 8. 31.(화)10:00

5. 개찰일시 : 2021. 9. 1.(수) 10: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 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추정가격 기준 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해야 함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제6절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위 밑줄 친 기준 “5.”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 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 ※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등 관련
사항은 00000(000-0000),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00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붙임)재무관 귀하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0000 배수지 청소용역

나. 과업내용 : 배수지 청소용역

다. **기초금액 : 176,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현 장 : 충청남도 000 00000

바. 용역기간 : 계약 후 300일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공고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하며 우리도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또는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제한 대상으로서 제한지역(광역시자치체)의 범위를 명시

▶ 중소기업 제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관련 안내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1. 11. 3.(수) 10:00 ~ 2021. 11. 5.(금) 10:00

5. 개찰일시 : 2021. 11. 5.(금) 11: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추정가격 기준 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해야 함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 나. 평가기준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합니다.
-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19.10.31.발행 2018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3.07%, 유동비율 114.76%)을 적용합니다.
- 라. 특별신인도는 공고문 3. 가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여부 등은 우리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1) 당해 용역 기초금액 : 176,363,000원(부가가치세포함)
 - 2)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시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8.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9. 입찰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1.5%)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 ※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등 관련 사항은 00000(000-0000),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00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용역
------	-------------	----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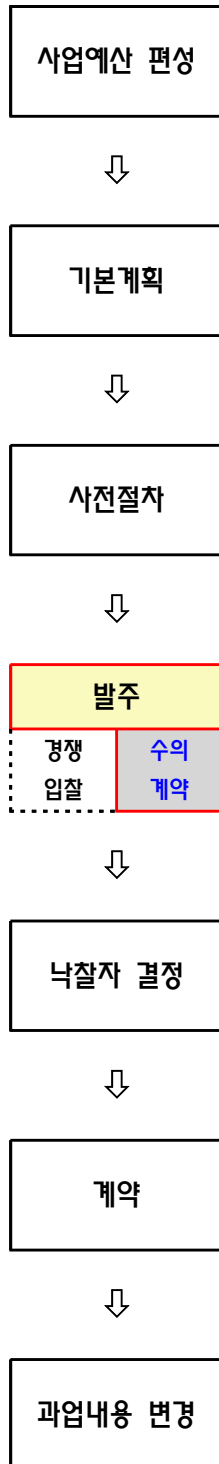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용 역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 라·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호)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계약부서에 사유서 제출)

- (1)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
- (2) 계약의 품질이나 특성 등으로 다른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연간 수주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업체만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부서	발주단계 - 수의계약	용역
------	-------------	----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업체를 지역업체로 제한 (지역제한)해야 한다.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

구 분	용 역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한시적 특례 ⁸⁾ (~ '21. 12. 31.)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없을 경우
- (2) 기타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역제한

- 용역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역이 충청남도인 경우 충청남도로 지역제한
- 용역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외 인접 시·도(대전, 세종 중 선택가능)로 제한 가능
- 지역제한은 지역에 업체의 본사(본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있어야 함
- 수의계약 선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역업체 이어야 함
-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해당지역에 있어야 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30.)

참 고

수의 견적 제출 공고 - 학술연구용역 (예시)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0000000 학술연구용역

나. 구입내역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8,000,000(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입찰방법 :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1. 06. 04.(금) 10: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1. 06. 08.(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06. 08.(화) 11:00 0000000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결정방법 :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견적서 제출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기관으로서 다음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17-23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불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pm 3\%$ 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자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본 물품구입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아.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명시

9.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000000 (☎ 000-000-0000)

다.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000000 (☎ 000-000-0000)

2021. 00. 00.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임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1.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단계	용역
------	-----------	----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기술용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2) 학술연구용역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3) 일반용역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 중 30%를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지역업체 참여도 기준(+3점)

심사항목	배 점	• 심 사 방 법
나. 지역업체 참여도	3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라. 계약부서 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한다.

마. 계약부서 담당자는 '일반용역'에 대하여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되,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적용한다.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단계	용역
------	-----------	----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2021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김도읍 국회의원) 지적 및 행정안전부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와-4905, 2021.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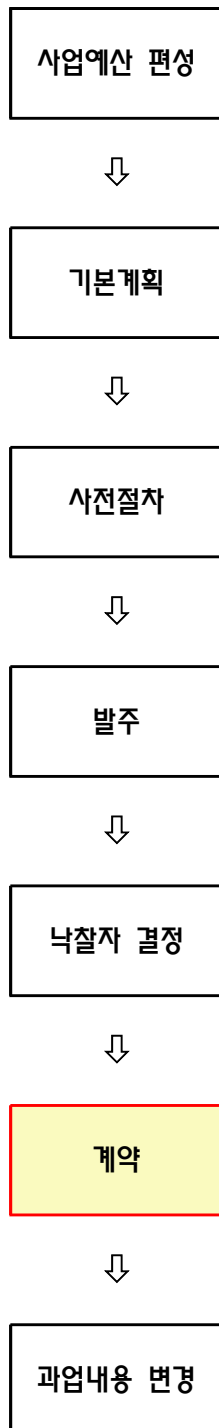
- ① 공사·물품·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된 목적물이 공사계약임에도 물품·용역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사례 금지
- 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는 사례 금지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 ‘가’ 또는 ‘나’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되,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에 접근성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계약부서	계약 단계	용역
------	-------	----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제한 대상 용역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에 하도급계약 금액 100분의 50 이상 하도급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상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된 기술자 사역 및 설비 등의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계약의 기성 및 완료 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도록 해야 한다.

라. 계약부서 담당자는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약상대자에게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계약부서	과업내용 변경 단계	용역
------	------------	----



□ 주요내용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과업내용이 추가 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계약된 과업의 내용(계약금액 기준)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된 용역의 과업내용(계약금액 기준)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로서 추가 발주하여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추가용역은 과업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당초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충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 ① 구축목적 : 관내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 정보제공으로 지역제품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② 도 메 인 : <http://cnsenavi.or.kr/>
- ③ 주요기능 : 공공구매 소개, 관내 중소기업 조회, 지도검색 서비스
 - 공공구매 소개 : 공공구매에 대한 정의, 배경, 종류 및 제도, 관련 법령 소개
 - 기업정보 조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등)

메뉴구성	▶ 기업정보, 상품정보, 공공기관 구매정보, 커뮤니티, 등록현황, 온라인 박람회
종합검색	▶ 일반현황 : 인증구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본사), 홈페이지, 주업종, 대표품목, 사업자등록일, 보유면허, 가입조합, 상시근로자수(명) ▶ 제품정보 :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제품명

< 충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메인화면 >

